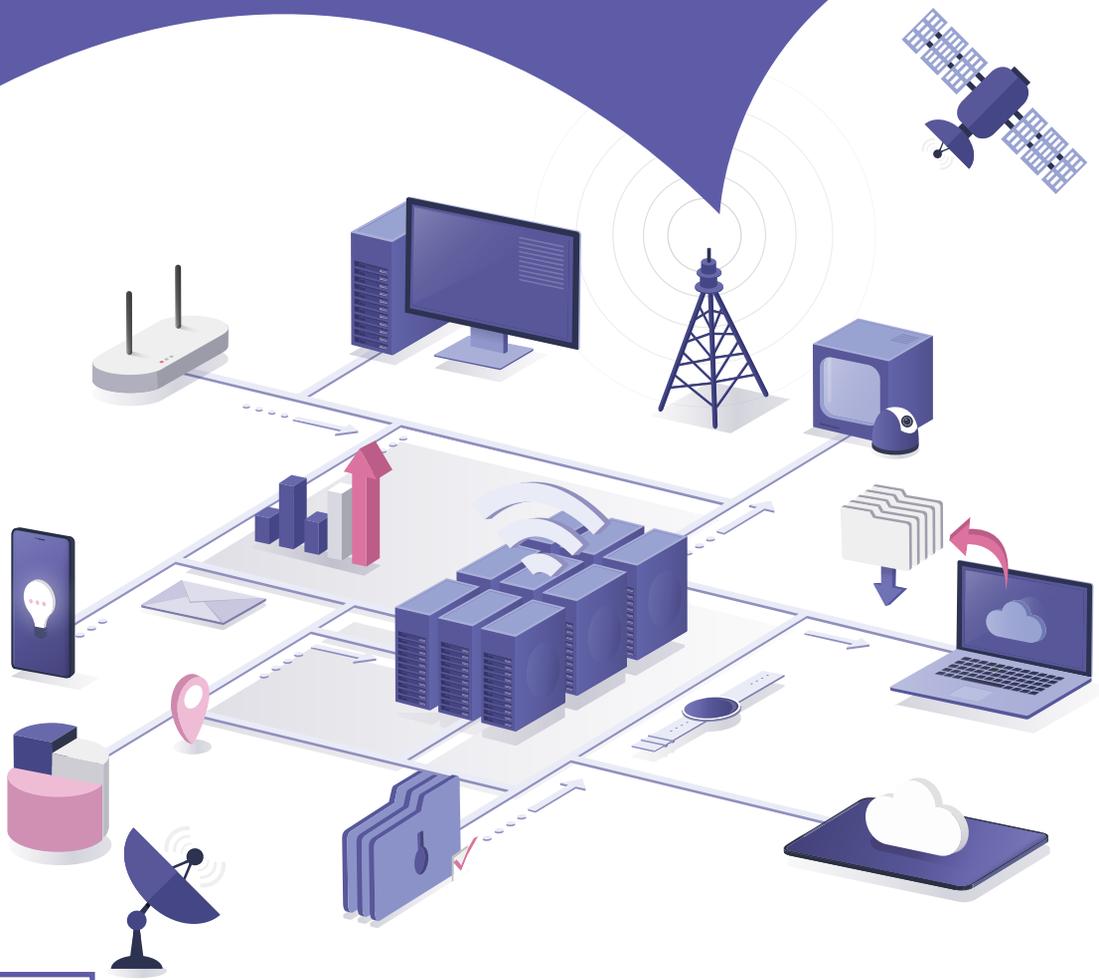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방안 연구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방안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31.

연구책임자 : 김청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국제상호협력담당)  
연구원 : 안형배(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국제상호협력담당)  
최현신(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국제상호협력담당)



## 요 약 문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기 간 혼·간섭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IT) 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전파인증: KC)를 수행하고 있다. 전파인증은 국제표준에 따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파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IT 제품은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IT 제품 제조사들은 수출국의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직접 해당 수출국을 방문하여 시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 제품의 수출입에 따른 전파인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미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를 체결하고 서로 상대국가에서 적합하게 수행한 전파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므로써 수출입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 존재하는 기술규정의 차이가 자유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FTA 무역기술장벽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이한 기술규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의 장벽이 되던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가 수행 하던 시험이나 인증의 내용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상대국가에서 인정해 줌으로서 동일 제품에 대하여 국가별로 시험인증을 수행할 때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제품의 무역 흐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부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시 외국의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협정 범위가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는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 전단계를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세계적 인증환경 변화 및 무역 활성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술규정의 차이가 있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효율적인 협상을 도모하여 2001년 MRA 1단계 체결이후 약 20년만에 방송통신분야 MRA 2단계 최초 체결('17.12월) 및 이행('19.6월) 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체결된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는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으로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지식 및 전파 인증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캐나다와의 MRA 2단계 확대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부터 2020년도까지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캐나다 인증서(IC) 발급을 수행한 결과, 차량용 스마트키, 라벨프린터, 블루투스모듈, 블랙박스 등 국내 수출 제품 7건에 대하여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서를 직접 발급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캐나다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캐나다 양국가의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양국이 기존에 상호인정 체결을 완료한 국가(한국:5개 국가, 캐나다:15개 국가) 등 중복 국가를 제외한 양국의 17개 국가에 소재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도 한-캐나다 양국가에서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측이 요청하였다. 이에따라 캐나다측과 협의를 통해 일본, 중국 등 17개 국가 시험기관으로 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원을 통해 캐나다 인증서(IC)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한-영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였다. 브렉시트가 2020년 1월 31일로 조건부 연기되었으나, 노딜 브렉시트 위험 및 통상협정 공백에 대비한 한-영 FTA 협정문을 체결('19.8.22.)하였다.

한-영국 FTA 협정문은 기존에 체결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였으며 한-영국 FTA 협정문 부속서에 한-영국 EMC분야 상호인정협정(MRA)을 포함하였다. 한-영국 FTA 체결에 따라 협정문 시행을 위해서 국내고시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에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은 한-영 FTA가 발효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020년 8월 13일, 튀니지 정보통신연구센터(CERT)와 전파 시험·인증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양국의 제도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는 수입하는 ICT 제품에 대해서 전파 시험·인증을 튀니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인증 처리에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는 ICT 분야 기술규정과 시험·인증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공유와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튀니지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시험·평가, 인증서 발급 절차, 기술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를 2020년 9월 17일에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양국의 규제 협력을 위하여 양기관간 인증제도를 소개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사전 발표 요청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도 인도네시아 유무선 기술기준 현황을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시험 수행능력 부족으로 일부 해외 시험기관을 인정하여 시험을 허용하고 있으나 매년 인도네시아가 인정한 해당 해외 시험기관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 COVID-19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에는 한-인도네시아간 MRA 협상을 더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측은 한국과 FTA 협상 당시에는 EU역내 국가간에 무선기기 지침 관련 일치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FTA 협정문 부속서(2B)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FTA 협정문 부속서 제7.1조(이행 및 협력)에 포함의지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선기기 시험분야가 부속서(2B)의 적용범위에 추가되거나 또는 상호인정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한-EU FTA 규제대화체 회의와 2020년 12월에 한-EU MRA 영상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EU 양측은 유럽의 무선규정(REG), 한국의 5G, SAR 제도현황 등을 상호 소개하고 이해하는 정보교환을 수행하였다. 2020년도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1년에는 EU측 요청에 대한 한-EU 무선분야의 실질적인 규정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Contents

<b>제1장 서론</b>	<b>15</b>
<b>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b>	<b>21</b>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21
1. MRA의 이해	21
2. MRA 체결현황	22
제2절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2단계) 체결 이행방안 연구	29
1.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 인증서 발급	29
2.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 시험성적서 발급	33
제3절 주요국가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40
1. 한-영국 MRA 체결 이행	40
2. 한-튀니지 MoU 체결	50
3. 한-인도네시아 MRA 추진 현황	52
4. 한-EU FTA MRA 추진 현황	57
<b>제3장 결론</b>	<b>63</b>
[부록 1] 유럽공동체(EU) 적합성평가 제도	66
[부록 2] EU 상호인정협정(MRA) 및 적합성평가 의정서의 이행	74
[부록 3]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78
[부록 4] 비회원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 절차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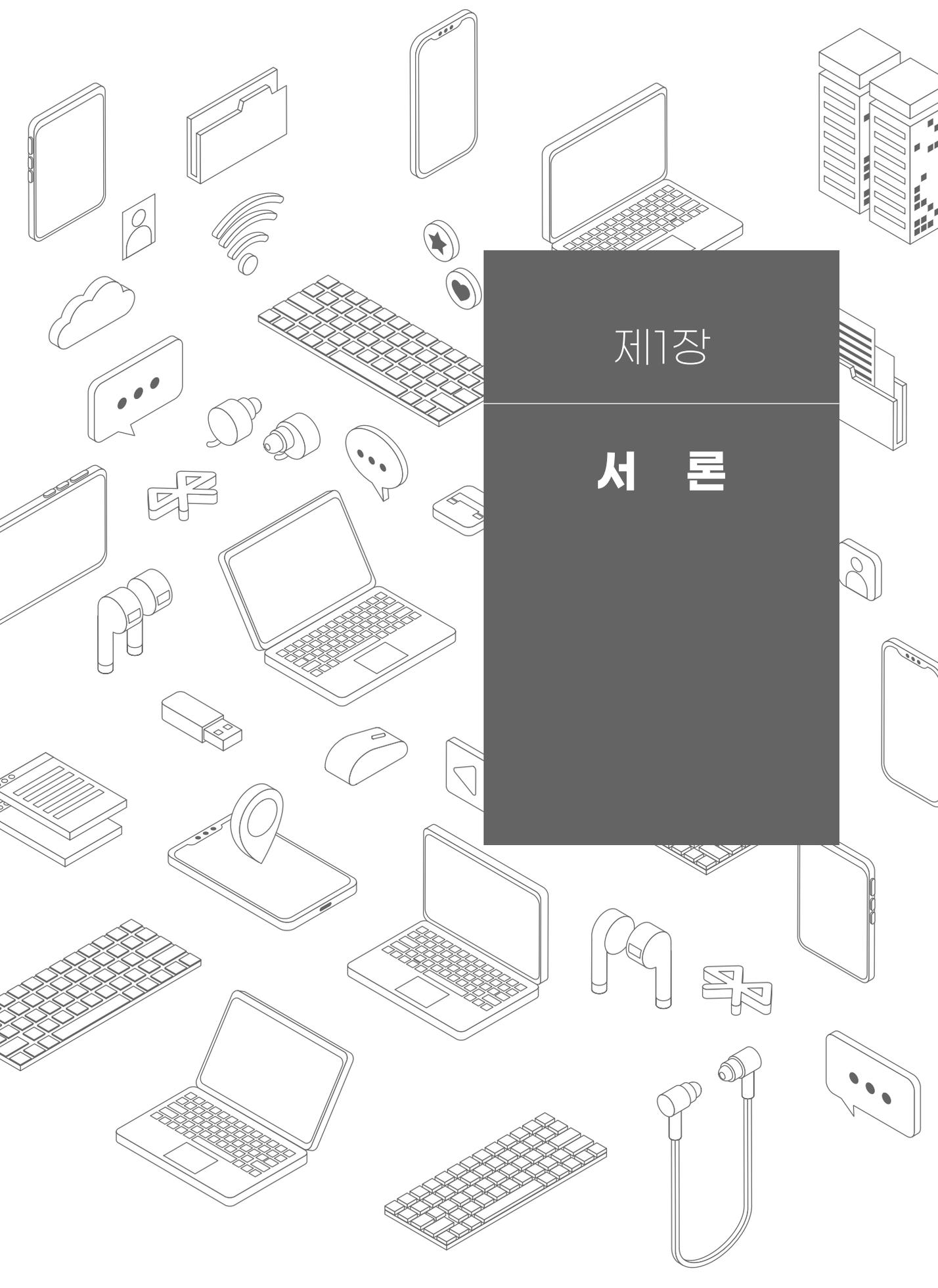
표 목차

[표 1]	MRA 체결국가 현황	23
[표 2]	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24
[표 3]	상호인정협정 국가별 시험분야 및 주요대상품목	24
[표 4]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25
[표 5]	FTA 체결에 따른 MRA 관련 조항	28
[표 6]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19년도)	31
[표 7]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20년도)	32
[표 8]	MRA 1, 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36
[표 9]	캐나다 인증(IC)을 받기위해서준비하는 서류 목록	37
[표 10]	MRA 국내 시험기관 및 지정분야 현황	38
[표 11]	한-영 FTA 체결에 따른 영국 EMC 상호인정 시험기관현황	45
[표 12]	튀니지 수출품목 중 주요 시험·인증 현황	51
[표 13]	한-튀니지 ICT 제품 수출·입 현황	51
[표 14]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54
[표 15]	CE 공식마크	60

## 그림 목차

[그림 1]	MRA 이행절차	21
[그림 2]	기관별 MRA 역할	22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27
[그림 4]	한-캐나다 MRA 인증시스템 프로세스	30
[그림 5]	전파인증을 받는 대상품목	32
[그림 6]	한-캐나다 MRA 전파인증 절차	36
[그림 7]	한-튀니지 양해각서에 따른 전파시험·인증 협력 내용	51
[그림 8]	한-인니 기술규제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개최 사진	55





제1장

서론





## 제1장 서론

국내 제조사 등 방송통신(IT) 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본 연구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17.12월)하고 캐나다 인증서를 국내에서 최초 발급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여 2020년 까지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서 7건의 캐나다 인증서를 국내에서 발급되도록 하였다.

제2장 제1절에는 국내외 MRA의 기본 이해를 작성하였다. MRA가 우리나라와 체결되어 있는 영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EU 및 칠레 등 국가와의 MRA 시험기관 현황 및 MRA 추진시 고려사항을 현행화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일찍부터 MR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도 MRA 추진을 시작하고 있다. MRA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 나라와 MRA를 체결중이며 개발도상국도 MRA 체결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제2장 제2절에는 그동안, 방송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 범위가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단계를 국내에서 완료(MRA 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17년 12월)함에 따라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분야 국내 인증기관을 최초 지정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서를 국내에서 발급토록 하고 시간과 비용 및 영어 등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한편, 한국 및 캐나다 양국가의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양국이 기존에 상호인정 체결을 완료한 국가(한국:5개 국가, 캐나다:15개 국가) 등 중복 국가를 제외한 양국의 17개 국가에 소재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도 한-캐나다 양국가에서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측과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일본, 중국 등 17개 국가 시험기관으로 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원을 통해

캐나다 인증서(IC)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2019년 하반기 부터 2020년까지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캐나다 인증서(IC) 발급을 수행한 결과, 차량용 스마트키, 라벨프린터, 블루투스모듈, 블랙박스 등 국내 수출 제품 7건에 대하여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서를 직접 발급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캐나다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제3절 1번에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한-영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브렉시트가 2020년 1월 31일로 조건부 연기되었으나, 노딜 브렉시트 위험 및 통상협정 공백에 대비한 한-영 FTA 협정문을 사전에 체결( '19.8.22.)하였다. 한-영국 FTA 협정문은 기존에 체결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였으며 한-영국 FTA 협정문 부속서에 한-영국 EMC분야 상호인정협정(MRA)을 포함하였다. 한-영국 FTA 체결에 따라 협정문 시행을 위해서 고시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은 한-영 FTA가 발효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제2장 제3절 2번에는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는 수입하는 ICT 제품에 대해서 전파 시험·인증을 튀니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인증 처리에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프리카 최초로 시험인증분야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결과를 작성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는 ICT 분야 기술 규정과 시험·인증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공유와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튀니지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시험·평가, 인증서 발급 절차, 기술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제3절 3번에는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를 2020년 9월 17일에 화상으로 개최한 내용과 MRA 협상진행 사항을 작성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시험 수행능력 부족으로 일부 해외 시험기관을 인정하여 시험을 허용하고 있으나



매년 인도네시아가 인정한 해당 해외 시험기관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 COVID-19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에는 한-인도네시아간 MRA 협상을 더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2장 제3절 4번에는 EU 집행위원회와 무선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협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EU측은 FTA 협상 당시에는 EU역내 국가간에 무선기기 지침 관련 일치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부속서 2-B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FTA 협정문 제7.1조(이행 및 협력)에 포함의지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선기기 시험분야가 부속서 2B의 적용범위에 추가되거나 또는 상호인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한-EU FTA 규제대화체 회의 및 2020년 12월에 한-EU MRA 영상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EU 양측은 유럽의 무선규정(REG), 한국의 5G, SAR 제도현황 등을 상호 소개하고 이해하는 정보교환을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EU측 요청에 대한 한-EU 무선분야의 실질적인 규정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제2장

#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





## 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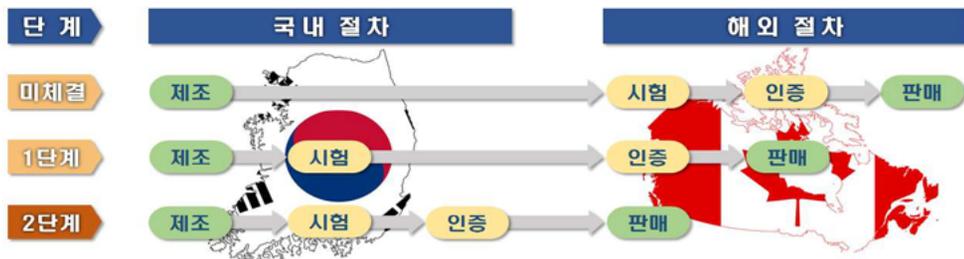
###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 1. MRA 이해

MRA<sup>1)</sup>는 국가 간 협의한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대국 적합성평가<sup>2)</sup>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이며 그림 1에 이행절차를 표시하였다.

MRA 이행단계는 체결 전 단계와 체결 후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MRA 체결 전에는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수입국 역내에서만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받도록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MRA 1단계가 체결되면 수출국 역내에서 수입국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생산된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에서 수용 후 별도 인증을 하고 MRA 2단계가 체결되면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수출국

그림 1. MRA 이행절차



역내에서 인증된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수용하도록 하여 제조사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MRA 1단계 수행을 위해서 국립전파연구원(지정기관)은 국내 시험기관에 MRA 대상국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한 후 상대국에 통보하고 있다. MRA상대국이 한국 지정기관을 승인하면 지정시험기관은 국내 기업제품에 대해 시험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기업은 지정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상대국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그림 2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통상적으로 영문 Arrangement를 사용하지만, 일부에선 Agreement를 사용하기도 함  
 2)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시험·평가 (EMC, 유·무선, SAR분야)

그림 2. 기관별 MRA 역할



MRA 추진근거는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명시되어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적합성평기관 육성·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APEC TEL MRA 근거와 WTO TBT, FTA TBT 해소 및 국가 간 FTA 발효에 따라 국가 간 MRA를 추진하고 있다.

※ FTA는 무역조정지원법률(제22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산업부가 주관하고, 산업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무역기술장벽협상과)은 무역기술장벽(FTA TBT) 실무교섭을 추진

##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MRA는 교역량이 확대되는 세계경제 속에서 자국의 시장을 상호개방하여 경쟁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규정의 상이함, 적합성평가 기관의 중복 규제, 적합성평가절차 이행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 등의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MRA 체결을 통해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시간<sup>3)</sup>과 비용<sup>4)</sup>을 줄여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인 방송통신기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간 기술 기준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 및 정보교환 상호신뢰를 도모하고 있다.

2001년 9월 한-캐나다 등 MRA 1단계 체결이후 그동안 추진된 방송통신분야 MRA 체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MRA 체결국가 현황

<'20.12월말 현재>

구 분	MRA 1단계					MRA 2단계
	미국	베트남	EU	영국	칠레	캐나다
MRA 체결일자	'05.5월	'06.1월	'11.7월	'19.8월	'08.6월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MRA 체결분야	EMC, 유선, 무선, SAR	EMC, 유선, 무선	EMC	EMC	유선	EMC, 유선 무선, SAR
MRA 시험기관 현황(개)	국내(35) 미국(82)	국내(29) 베트남(0)	국내(53) EU(256)	국내(53) 영국(33)	국내(0) 칠레(0)	국내(24) 캐나다(8)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일찍부터 MR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후발 국가들도 MRA 추진을 시작하고 있다. MRA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 나라와 MRA를 체결중이며 개발도상국도 MRA 체결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5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수출국 시험 기간 단축) 국내 수출업체 ICT 제품 수출시 해당국 시험 소요기간이 약 10주 소요, MRA로 한국내 시험시 약 1주 소요(약 9주 단축)

4) (시험인증비용 절감) 국내에서 해당국 수출제품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므로 제조사의 시험에 소요되는 직간접비(항공료, 숙박료, 통역 등) 비용 절감

표 2. 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협정체결 국가						
	미국	캐나다	EU	영국	베트남	칠레
협정단계	1단계	1, 2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체결일자	'05.5월	'01.9월 (1단계) '17.12월 (2단계)	'11.7월	'19.8월	'06.1월	'08.6월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미국, EU 등 국가별 시험분야 및 주요 대상품목은 표3과 같다.

표 3. 상호인정협정 국가별 시험분야 및 주요대상품목

국가별		시험분야	대상품목
1단계	미국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EMC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기기 등
	EU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영국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베트남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헤드셋, 무선LAN 등
		EMC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칠레	유선 무선·EMC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캐나다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EMC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표 4.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20.12월말 현재>

구분	미국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	칠레	한국	뉴질랜드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 (98.5)	○ (19.2)	○ (07.2)	○ (01.3)	○ (03.10)	○ (99.3)	○ (05.4)	○ (09.3)		○ (05.5)		○ (02.6)		○ (16.6)
EU	○ (98.5)		○ (21.1)	○ (01.04)	○ (98.10)						○ (11.7)	○ (98.7)	○ (99.1)		
영국	○ (19.2)	○ (21.1)		○ (19.9)	○ (20.12)						○ (19.8)	○ (19.3)	○ (19.3)		
일본	○ (07.2)	○ (01.4)	○ (19.9)			○ (02.1)									
캐나다	○ (01.3)	○ (98.10)	○ (20.12)			○ (99.8)	○ (07.4)	○ (02.3)	○ (12.2)		○ (01.9)		○ (99.8)		
싱가포르	○ (03.10)			○ (02.1)	○ (99.8)		○ (99.8)	○ (99.8)	○ (14.6)				○ (99.8)		
대만	○ (99.3)				○ (07.4)	○ (99.8)		○ (99.8)					○ (99.8)		
홍콩	○ (05.4)				○ (02.3)	○ (99.8)	○ (99.8)						○ (99.8)		
베트남	○ (09.3)				○ (12.2)	○ (14.6)					○ (06.1)				
칠레											○ (08.6)				
한국	○ (05.5)	○ (11.7)	○ (19.8)		○ (19.6)				○ (06.1)	○ (08.6)					
뉴질랜드		○ (98.7)	○ (19.3)										○ (98.5)	○ (08.4)	
호주	○ (02.6)	○ (99.1)	○ (19.3)		○ (99.8)	○ (99.8)	○ (99.8)	○ (99.8)				○ (98.5)			
중국												○ (08.4)			
말레이시아	○ (16.6)														

※ MRA 1단계(○), MRA 2단계(◎)

※ 주요 국가(14개국)에서 33건의 MRA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MRA 2단계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

MRA 상대국과의 교역 상황 및 적합성평가제도 등을 토대로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요구가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MRA를 체결토록 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MRA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출입 교역량) 방송통신분야 MRA 체결시 ICT 제품 수출입 교역량을 분석하고 수출량이 클수록 MRA 체결 효과 높음
- ② (상대국 인증건수) MRA 체결전에 우리나라와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제품에 대한 인증건수를 조사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건수가 많을수록 MRA 체결 효과 높음
- ③ (상대국의 TBT<sup>5)</sup> 수준) 상대국가의 인증비용, 인증처리기간 등 무역기술 장벽(TBT) 수준이 높을수록 MRA 체결 효과 높음

※ TBT 높은 국가 :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 인도, 이스라엘 등

- ④ (FTA 체결 상황)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MRA는 정치적 대응 및 행정적 접근에 용이함

※ FTA 체결하였거나, 체결 회의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의도를 가진 국가로 볼 수 있으므로, MR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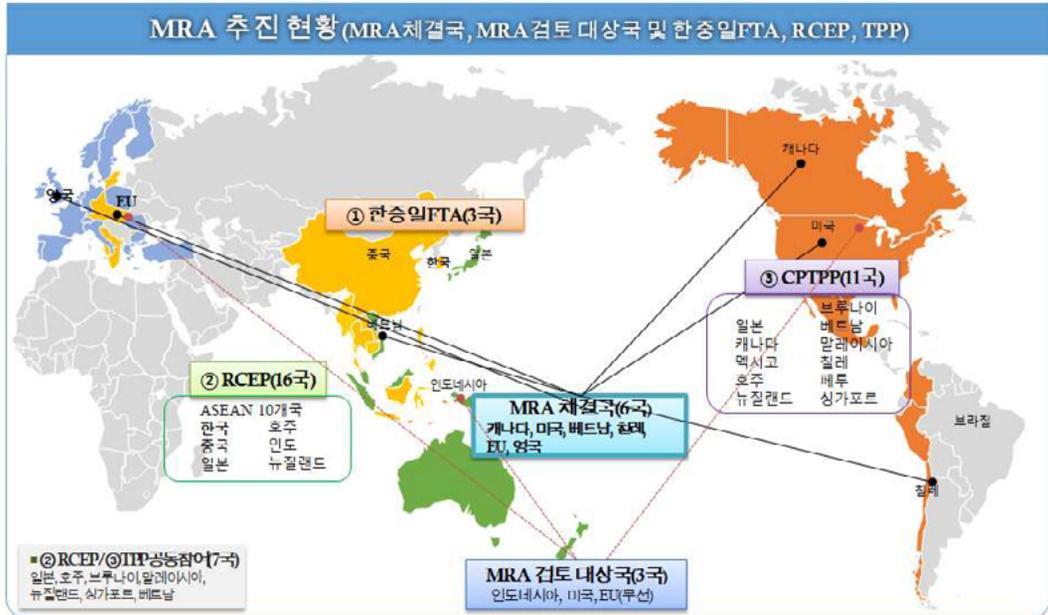
- ⑤ (우리 산업체의 요구) 산업계의 국별 MRA 추진 선호도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국내 방송통신기기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대국의 인증제도 등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는 MRA를 체결하여 국내제품의 진출 용이
- ⑥ (이원화된 상호협력 전략 마련) 기술기준이나 적합성평가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와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한 국가를 구분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장벽 해소 전략을 마련하고 적합성평가제도가 미완비된 국가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합성평가제도 구축, 기술기준 제·개정, 시험방법 교육 등 국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신뢰구축 선행

5)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기술장벽

TBT는 타국제품이 자국 시장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의 해소는 자연적으로 수출을 용이하게 할 것임

□ MRA 추진 현황(MRA 검토 대상국)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① 한중일 FTA.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FTA  
 ②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중국, 일본, 호주, 아세안 국가(10개국)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 - 중국 중심  
 ③ CPTPP(Comprehensive and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모든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한국 미가입) - 일본 중심

- ① MRA 체결국(6개국) :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EMC분야), 영국(EMC분야)
- ② MRA 검토 대상국 : 미국(2단계), 인도네시아, EU(무선분야) 등
- ③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 참여,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FTA( '19년말 체결 예정) - 한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추진
- ④ 한중일 FTA :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FTA
- ⑤ EFTA : EU에 참가하지 않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⑥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1개국이 '18년 3월에 서명완료

표5. FTA 체결에 따른 MRA 관련 조항

국 가	내 용
<b>한-캐나다</b> MRA체결 '01.9 FTA체결 '14.9 (FTA발효 '15.1)	제6장(표준관련조치) 제6.5조(특정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 다) 다른쪽 당사국에 대하여 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2단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은 제2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b>한-칠레</b> MRA체결 '08.6 FTA체결 '03.2 (FTA발효 '04.4)	제12장 전기통신 6.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로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시험기관이나 시험설비에서의 시험이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와 절차에 합치하게 수행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수락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한다.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시험기관의 상호 인정 및 시험 보고서의 상호 수락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신장비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약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고려한다.
<b>한-미국</b> MRA체결 '05.5 FTA체결 '10.12 (FTA발효 '12.3)	제9.5조 적합성평가절차 5. 각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2단계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제2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b>한-EU</b> MRA체결 '11.7 FTA체결 '10.10 (FTA발효 '11.7)	부속서 2-나(전자제품) 제7조(이행 및 협력) 1. 양 당사자는 무선주파수 기기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규제 문제에 관하여 공동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을 고려한다.
<b>한-영국</b> MRA체결 '21.1 FTA체결 '19.8 (FTA발효 '21.1)	2. 이 부속서는, 부록 2-나-1에서 정의된 전기 및 전자 기기, 전문가용 전기기술기기, 가정용 전기용품 및 소비자 전자제품(이하 “적용대상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안전과 전자파적합성(이하 “전자파적합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b>한-중국</b> FTA체결 '15.6 (FTA발효 '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결과 상호수용 협의) 양국은 IECCE CB 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전기전자 제품 시험결과 상호수용을 촉진키로 합의</li> <li>- 시험기관 설립 지원) 적합성 평가기관을 상대국(법인)에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li> <li>- 시험인증 애로 완화) 중국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축소, 기술규정 제개정 시 정보제공 등을 규정</li> </ul>
<b>한-아세안</b> 상품분야 FTA체결 '06.8 (FTA발효 '07.6) 서비스분야 FTA체결 '07.11 (FTA발효 '09.5) 투자분야 FTA체결 '06.6 (FTA발효 '09.9)	제5장(최종조항) 제5.2조(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역 협상위원회는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는데에 자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b>한-싱가포르</b> FTA체결 '05.8 (FTA발효 '06.3)	부속서 8A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1. 각 당사국은 APEC 전기통신 및 정보 작업반(APEC TEL)에서 전기통신기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APEC TEL 상호인정약정 1단계 및 2단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b>한-인도</b> FTA체결 '09.8 (FTA발효 '10.1)	제3절 제2.28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2. 3) 상호 이익 및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4) 협의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부속서 2-나에 열거된 분야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된 협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제2절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 이행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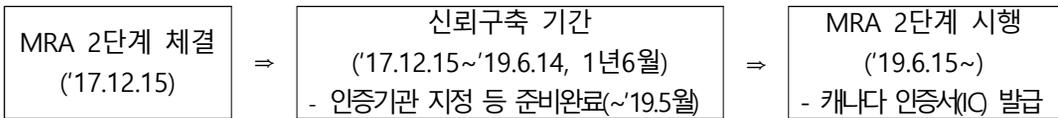
### 1.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 인증서 발급

한-캐나다 MRA 1단계 체결( '01.9월) 및 FTA 발효\*( '15.1월)에 따라 한-캐나다 MRA 2단계 체결(' 17.12.15)을 추진하였으며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FTA 발효 : 제6장(표준관련조치) 제6.5조(특정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 다) 다른쪽 당사국에 대하여 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2단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장관님이 2017년 11월 29일에 먼저 협정문 서명을 한 후에 우리측에 캐나다측 장관님의 서명된 협정문을 전달하였고 2017년 12월 15일에 우리부 장관님이 최종 서명을 하여 한-캐나다 MRA 2단계가 체결되었다.

####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 일정〉



협정문 체결에 따라 2019년도에 MRA 국내외 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여 관련 지침을 최초 마련하였다. 마련한 MRA 인증기관 지정지침을 통해 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이천 소재)를 최초 지정하였고( '19.6.13), 캐나다 지역내에 있는 인증기관으로 넴코(Nemko)를 캐나다측 지정기관으로 2021년 상반기에 승인 할 예정이다. 캐나다측 정부의 승인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의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국제표준에 적합한 시험관리 품질관리 규정(ISO/IEC 17025),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기관 품질관리 규정(ISO/IEC 17065), 인증기관 지정서, 인증기관 시험업무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서 및 한-캐나다간 인증접수시스템 구축 등을 심사한 결과, 국내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한-캐나다 MRA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캐나다 정부에 승인을 요구하여 캐나다 정부로부터 방송통신분야 국내 인증기관으로 이천 전파시험인증센터가 국내 최초로 승인될 수 있었다.

- ※ MRA 체결국이 자국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 상대국에 통보 → 상대국이 검토 후 승인
- ※ 협정문(제5조) : MSIT는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제 당국으로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승인 권한을 RRA에 위임하며, RRA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이 관련 담당자이다.

캐나다 규정에는 국내 MRA 인증기관이 캐나다 기술기준(45개)에 대한 시험을 위한 시험기관을 갖추거나 또는 국내 MRA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지정시험기관은 캐나다 기술기준 42개에 대하여 시험위탁이 되도록 전파시험인증센터와 시험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전파시험인증센터는 국내지정시험기관이 시험을 하지 못하는 캐나다 기술기준 3개에 대하여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자체시험\*\*(In-house test)을 하도록 하였다.

\* 전파시험인증센터가 국내지정시험기관의 장과 시험인증 등에 대한 위탁협약서 체결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한편, 캐나다 인증을 국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인증신청·심사,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MRA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 한-캐나다 MRA 인증시스템 프로세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2019년 6월부터 캐나다 인증서(IC) 발급을 위해 캐나다 규정(RSP-100\*) 준수 및 RSS 기술규격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인증 신청서의 제출 서류(19건), 시험내용 및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신청 절차를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인증서는 인증 심사 완료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 가능하다.

\* Radio Standards Procedures-100 : 캐나다 인증 처리 절차 관련 규정

인증 완료 후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캐나다 정부기관(ISED)에 인증 내역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기관의 REL(Radio Equipment Lists)시스템에 인증기관이 인증정보 등록을 완료해야만 인증 제품 캐나다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 정보 등록 시 관련 수수료(\$50)를 캐나다 정부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캐나다 인증서(IC) 발급을 수행한 결과, 표6 및 표7과 아래 표와 같이 차량용 스마트키, 라벨프린터, 블루투스 모듈 등 제품 총7건에 대하여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서를 발급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캐나다 수출을 지원하였다.

표 6.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19년도)

번호	제품명	인증날짜	인증종류	대리인
1	차량용스마트키 (ECU*)	'19.8.27.	신규인증	(주)케이씨티엘
2	라벨 프린터	'19.8.29.	신규제품군인증 (4개 모델)	(주)씨티케이
3	차량용스마트키 (ECU)	'19.9.11.	신규인증	(주)케이씨티엘
4	차량용스마트키 (ECU)	'19.11.7.	신규인증	(주)원택
5	블루투스모듈	'19.12.24.	신규인증	(주)씨티케이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차량용 전자제어장치로 스마트키와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차문, 트렁크 등의 개폐 등을 조절하는 장치

표 7.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2020년도)

번호	제품명	인증날짜	인증종류	대리인
1	차량용블랙박스	'20.8.12	신규제품군인증 (8개 모델)	(주)디티엔씨
2	차량용스마트키	'20.9.25.	신규인증	(주)원택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에 따라 국내 제조사 등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국내업체가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전파인증을 받는 주요 대상제품은 그림5와 같다.

그림 5. 전파인증을 받는 대상품목

	무선범위 1 (비면허 무선기기)		무선범위 2 (면허 개인 이동 무선기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조정용 완구 등		휴대폰 등 무선통신 장비
	무선범위 3 (면허 일반이동 및 고정용 무선기기)		무선범위 5 (면허 고정용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기기)
	무전기 중계기 디지털 스캐너 수신기 등		5G 기지국 장비 등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지정시험기관이 시험한 서류를 인증기관이 검토한 후 캐나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그림5와 같이 캐나다 인증서 발급분야는 무선분야 4\*개이다.

- \* 비면허 무선기기(Radio Scope 1), 개인용 이동 무선기기(Radio Scope 2), 일반이동 및 고정용무선기기(Radio Scope 3), 고정용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기기(Radio Scope 5)
- ※ 현재, 캐나다 무선분야 시험항목 45개 중 국내시험기관에서 42개 수행 가능하며, 3개 시험항목은 이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 2.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 시험성적서 발급

한편, 2019년 12월에 캐나다측은 기존에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5국\*, 캐나다: 15국\*\*)에서 발행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도 양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캐나다측이 요청하였다.

\* 한국 MRA 1단계 국가(5국) : EU, 미국, 베트남, 캐나다, 칠레

\*\* 캐나다 MRA 1단계 국가(15국) : EU, 미국, 베트남,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인도

\*\*\* 양국(20국)중 MRA 중복국가(3국 : EU, 미국, 베트남)를 제외하면 양국 MRA 국가는 17개국

한편, 캐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시험기관에 대한 승인기준을 캐나다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4. 승인 기준

ISED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적합성 선언(DoC)을 해야 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시험기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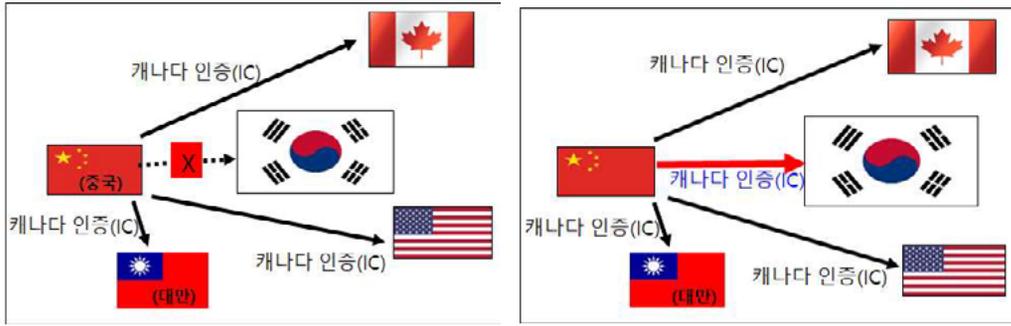
- a. 상호인정협정(MRA) 국가에 위치한 인정기관으로부터, 또는 MRA를 위해 캐나다에서 지명한 인정기관으로부터,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웹페이지에 게시된 MRA 이외 국가의 승인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 17025:2017 또는 ISO/IEC 17025: 2005(2020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 4. Criteria for recognition

In order to be recognized by ISED all testing laboratories subject to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or Certification must:

- a. be accredited to ISO/IEC 17025:2017 or ISO/IEC 17025:2005 (valid until November 30, 2020),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calibration and testing laboratories, by an accreditation body located in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Arrangement (MRA) country, or by accreditation bodies appointed by Canada for MRAs, or by a recognized accreditation body for non-MRA countries listed on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webpage;

캐나다 요청에 따른 사례를 보면 중국이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 이천 전파 시험인증센터에 캐나다 인증발급을 요청하면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캐나다 기술 규정에 따라 캐나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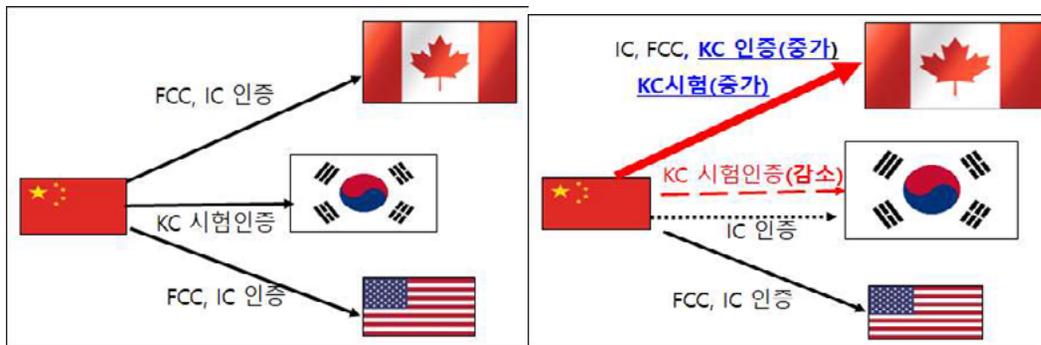


[ 캐나다 인증서(IC) 발급 협의전 ]      [ 캐나다 인증서(IC) 발급 협의후 ]

※ 캐나다의 MRA 1단계 체결 국가인 중국 제조사는 중국시험기관에서 캐나다 시험(캐나다 기술 기준)을 한 후에 캐나다와 MRA 2단계 체결국가(대만,미국, 홍콩 등 5국)에서 캐나다 기술규정에 따른 캐나다 인증을 받고 있음

한편,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험인증(KC) 발급 물량이 한국에서 캐나다 인증기관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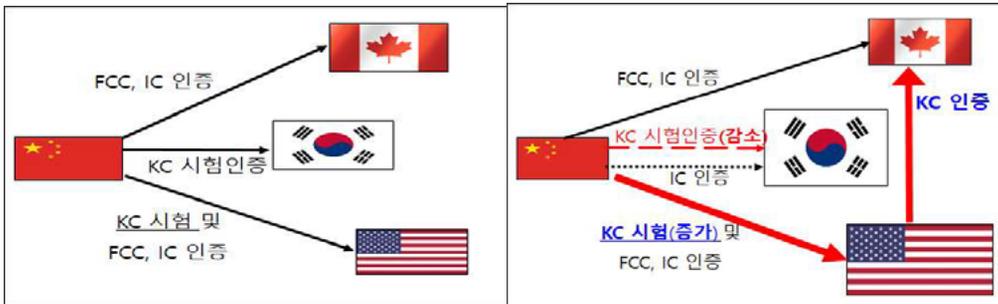
캐나다 시험인증기관은 한국 기술규정에 따라 중국제품을 한국에서 인정한 캐나다 적합성평가 기관에서 시험하고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캐나다 시험인증기관에 비해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KC시험인증, 언어(한글), KC시험인증 전문성, KC인증·시험비용(16만원:170만원, 1배:약2배)면에서 우세하고, 특히,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는 것이 KC시험·인증 대응과 사후관리에 유리하다. 아울러 중국의 시험제품을 거리가 먼 캐나다에 보내기 보다는 한국 시험인증기관에 보내 시험인증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함을 알 수 있다.



[ 한국 인증서(KC) 발급 협의전 ]      [ 협의후 시험인증 물량 감소검토 ]



또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험인증(KC) 물량이 한국시험기관에서 미국시험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검토해 보았다. 미국시험기관은 한국 기술기준에 따라 중국제품을 시험하고, 캐나다 인증기관에서 한국 기술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이나 미국 시험인증기관에 비해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KC시험인증 언어(한글), KC시험인증 전문성, 인증·시험비용(16만원: 170만원, 1배:약2배)면에서 우세하고, 특히,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 인증을 받는 것이 KC시험·인증 대응과 사후관리에 유리하다. 아울러 중국의 시험제품을 거리가 먼 미국 시험인증기관에 보내기 보다는 한국 시험인증기관에 보내 시험 인증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인증서(KC) 발급 협의전]

[협의후 시험인증 물량 감소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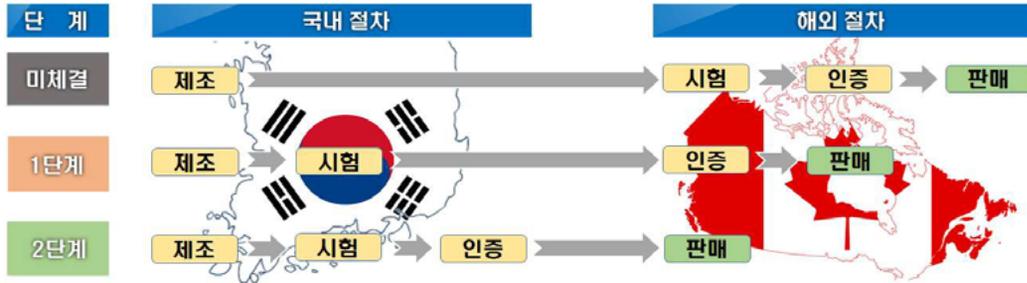
캐나다측 요청배경은 자국의 이익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캐나다 내부규정\* 및 APEC TEL MRA 협정규정서\*\*에 따라 MRA를 확대적용하기 위함이며, 현재 캐나다와 MRA 2단계 체결국 인증기관 모두는 캐나다 요청사항을 수행중이다.

- \* 시험기관 승인규정 : 캐나다와 MRA를 체결한 국가의 모든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은 인증을 수행한다.
- \*\* 회원국들은 공급자의 국적, 법인의 소재지, 생산설비가 소재하는 영토가 어디냐를 문제 삼아서, 승인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에 근거한 기기인증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위의 검토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5국, 캐나다:15국)에서 발행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도 양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상호 협의를 하였다.

한편,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 시험인증 절차는 그림6과 같다.

그림 6. 한-캐나다 MRA 전파인증 절차



(1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 시험 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수입 국가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2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 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국내 전파 시험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표 8. MRA 1, 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구분	국내(수출국)	국외(수입국)
1단계	제조업체 (신청인)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 인증기관 → 판매 (인증서 발급)
2단계	제조업체 (신청인)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발급)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 판매

\* 국내시험기관 : 국내 MRA 지정시험기관

\*\* MRA 2단계 인증기관 : 전파시험인증센터(이천)



캐나다 인증(IC)을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인증신청서, 시험성적서, 대리인 서한 등은 표 9와 같다.

표 9. 캐나다 인증(IC)을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번호	준비서류	주요내용
1	IC Application letter	인증 신청 정보 관련 서한(Cover letter)
2	RSP-100 Annex A	신청자 ISED Company Number 일치 여부 확인
3	RSP-100 Annex B - Test Report Cover Sheet	성적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4	RSS-102 Annex A and B	SAR 측정 시 작성
	RSS 102 Annex C and Brief	RF Exposure 측정 시 작성
	RF exposure or SAR test report	SAR or RF exposure 성적서
5	Canadian Representative	캐나다 대리인 지정 서한, 대리인 Company Number 확인
6	Agent authorization	대리인 지정 서한
7	IC certification	기존 발급 인증서
8	RSP-100 Annex D - Modular Approval Attestation	모듈 승인 시 작성
9	RF Test report	시험 성적서
	Antenna specification	장치에 사용되거나 시험되는 안테나 특성 정보(성적서)
10	External photo(s)	상세 외부 사진
	Internal photo(s)	상세 내부 사진
11	User manual	주의문구 표기 확인
	Operation description	매뉴얼과 구분 필요
12	Block diagram	사용된 모든 Crystal oscillator 및 주파수가 표기되어 있을 것
	Schematic diagram	제품 회로도 상세 내역
	Part list	블록도에 포함된 전체 부품 명시
13	Label photo(s)	라벨 부착 위치 및 표시 내용
14	IC Confidentiality letter	아래 항목 포함 1. Block diagram 2. Operational description 3. Parts lists and tune up information 4. SDR software and security information 5. schematic diagrams

지정시험기관 국내 지정현황(53개 기관)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 10. MRA 국내 시험기관 및 지정분야 현황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국내	MRA
1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무선/EMC/EMF	미국/베트남
2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선/무선/EMC/EMF	미국/베트남
3	(주)에스케이테크	유선/무선/EMC/SAR	미국/캐나다/베트남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선/EMC/EMF	NA
5	LG전자(주) MC 규격인증 Lab.	무선/EMC/SAR	NA
6	(주)원택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7	엘지전자(주) 디지털미디어규격시험소	무선/EMC	미국
8	(주)BWS TECH	유선/무선/EMC/SAR	미국
9	(주)에스테크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10	(주)이티엘	유선/무선/EMC	NA
11	(주)한국기술연구소	유선/무선/EMC/EMF	베트남
12	(주)씨티케이	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13	(주)넴코코리아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14	한국전자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유선/무선/EMC	미국
15	삼성전자(주)제3시험기관	무선/SAR/EMF	미국
16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무선/EMC/SAR/EMF	미국/베트남
17	(주)에이치시티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18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19	(주)디티앤씨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20	(주)케이씨티엘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21	(주)코스텍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22	(주)유씨에스	유선/무선/EMC/EMF	미국
23	(주)표준엔지니어링	무선/EMC	NA
24	(주)엘티에이	유선/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25	주식회사 씨에스텍	유선/무선/EMC	베트남
26	(주)케이이에스	유선/무선/EMC/SAR	미국/캐나다/베트남
27	(재)충북테크노파크	EMC	미국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국내	MRA
28	(주)이엠씨랩스	유선/EMC	NA
29	(주)스탠다드뱅크	유선/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30	(주)지에스티엘	유선/무선/EMC/EMF	베트남
3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무선	NA
32	한국에스지에스(주)	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33	모본(주)	무선/EMC	미국/캐나다/베트남
34	엘지전자(주) 홈플러스라이언스 전자파규격시험소	EMC	미국
35	(주)제이앤디엘	유선/무선/EMC	NA
36	(주)키코	무선	NA
37	주식회사 규격인증센터	유선/무선/EMC	미국/베트남
38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SAR	NA
39	(주)엔트리연구원	유선/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40	주식회사 비비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	무선/EMC/SAR	미국/캐나다/베트남
41	주식회사 랩티	유선/무선/EMC	미국/캐나다/베트남
42	주식회사 이엔지	유선/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43	유엘코리아주식회사	무선/EMC/SAR/EMF	미국/캐나다/베트남
44	(주)케이알엘	무선/SAR	NA
45	인터텍이티엘셈코(주)	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46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선/무선/EMC	NA
47	(주)아이씨알	유선/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48	주식회사 엔씨티	유선/무선/EMC/EMF	미국/캐나다/베트남
49	(재)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유선/무선/EMC	NA
50	주식회사 디에스텍	유선/EMC	NA
51	피씨테스트코리아 주식회사	무선/SAR/EMF	미국/캐나다
52	재단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EMC	NA
53	한국광기술원	EMC	NA

### 제3절 상호인정협정 주요국가 추진현황

#### 1. 한-영국 MRA 체결 이행

영국의 EU<sup>6)</sup>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한-영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였다. 브렉시트가 2020년 1월 31일로 조건부 연기되었으나, 노딜 브렉시트 위험 및 통상협정 공백에 대비한 한-영 FTA 협정문을 체결('19.8.22.)하였다.

한-영국 FTA 협정문은 기존에 체결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였으며 한-영국 FTA 협정문 부속서(전자제품 : 참고1)에 한-영국 EMC분야 상호인정협정(MRA)을 포함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영국의 시험기관 지정기관인 정부(BEIS\*)와 협의하여 EMC분야 상호인정을 할 수 있는 영국 지역내 시험기관 33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20.12.8)하였다. 한편, 한국측 지정시험기관(53개)은 EMC분야에 대해서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별도로 영국측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영국은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여서 우리나라 시험기관을 영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음

한-영국 FTA 체결에 따라 협정문 시행을 위해서 고시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에 아래와 같이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은 한-영 FTA가 발효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호, 2020. 1. 31., 제정.]

####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과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6)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 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영국 등 28개국



나. 영국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5호, 2019. 12. 5.)

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2018.12.24.)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28호, 2018. 12. 24.)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전자파적합성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영국에 의하여 통보된 영국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영국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 (2) 3-가-1)-가)-(2)에 따른 영국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 (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 (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나)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

#### 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영국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

나. 영국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영국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

#### 5. 보칙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나. 시험소 현황 공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3-가-1)-가)-(2)의 영국이 통보한 영국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 관련 서류의 언어

영국의 공급자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6.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8호, 2020. 1. 31.>

1. 시행일

이 고시는 한-영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술기준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2-가 또는 2-나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한-영국 FTA 체결 이행을 위하여 영국측이 전자과적합성(EMC)분야 MRA 시험기관(33개) 신규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한-영국 FTA가 발효되는 2021년 1월부터 적합등록 발급업무를 시행하는 시험기관은 아래표와 같다. 영국측이 통보한 시험기관 목록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표 11. 한-영 FTA 체결에 따른 영국 EMC 상호인정(MRA) 시험기관 현황

<총 33개 시험기관 통보: 20.12.8>

구분	지정번호	시험기관명	주소	연락처
1	UK0095	MBDA UK Limited	EMC Department Golf Course Lane Filton Bristol BS34 7QW	Tel : +44 (0)117 931 8393 E-Mail : andy.lanbourne@mbda.co.uk
2	UK1871	Eurofins Hursley Limited	Trafalgar House Trafalgar Close Chandlers Ford Eastleigh SO53 4BW	Tel : +44 (0)23 8027 1111 E-Mail : andy.combes@eurofins.com Website : www.eurofins.co.uk/hursley
3	UK0018	AQL-EMC Ltd	16 Cobham Road Ferndown Industrial Estate Wimborne Dorset BH21 7PG	Tel : +44 (0)1202 861175 E-Mail : info@aqlmc.co.uk Website : www.aqlmc.co.uk
4	UK4651	Safran Electrical & Power UK Ltd	Pitstone Green Business Park Westfield Road Leighton Buzzard LU7 9GT	Tel : +44 (0)1296 663000 Ext 3559 E-Mail : kenneth.morley@labinal- power.com Website : www.safran-group.com
5	UK1833	Cranage EMC Testing Ltd	Wallace Way Tern Valley Business Park Market Drayton Shropshire TF9 3AG	Tel : +44 (0)1630 658568 E-Mail : mark@cranage.co.uk Website : www.cranage.co.uk
6	UK1936	QinetiQ Ltd	RF, E3 Test & Evaluation Cody Technology Park A5 Building, Room 2.47G Ively Road Farnborough Hampshire GU14 0LX	Tel : +44 (0)1252 392500 E-Mail : gdbarber@qinetiq.com Website : www.qinetiq.com
7	UK1105	HORIBA MIRA Limited	Watling Street Nuneaton Warwickshire CV10 0TU	Tel : +44 (0)2476 355000 E-Mail : steven.archer@horiba- mira.com Website : www.horiba-mira.com
8	UK0026	Element Materials	100 Frobisher Business Park Leigh Sinton	Tel : +44 (0)1684 571700 E-Mail :

		Technology Warwick Ltd	Road Malvern Worcestershire WR14 1BX	info.malvern@element.com Website : www.element.com
			Unit 1 Pendle Place Skelmersdale West Lancashire WN8 9PN	Tel : +44 (0)1695 556666 E-Mail : info.skelmersdale@element.com Website : www.element.com
			74-78 Condor Close Woolsbridge Industrial Park Three Legged Cross Wimborne Dorset BH21 6SU	Tel : +44 (0)1202 811700 E-Mail : info.wimbome@element.com Website : www.element.com
			Unit E South Orbital Trading Park Hedon Road Hull HU9 1NJ	Tel : +44 (0)1482 801801 E-Mail : info.hull@element.com Website : www.element.co
9	UK1896	Eurofins E&E ETC Limited	Caddsdow Industrial Estate Clovelly Road Bideford Devon EX39 3DX	Tel : +44 (0)1237 423388 E-Mail : enquiryetc@eurofins.com Website : etcal.co.uk
10	UK4416	Electromagnetic Testing Services Ltd	Pratts Fields Lubberhedges Lane Stebbing Dunmow Essex CM6 3BT	Tel : +44 (0)1371 856061 E-Mail : info@etsemc.co.uk Website : www.etsemc.co.uk
11	UK0047	BAE SYSTEMS (Operations) Limited	Product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Marconi Way Rochester Kent ME1 2XX	Tel : +44 (0)3300 484 291 E-Mail : paul.j.davison@baesystems.com Website : www.baesystems.com/faradaytestcentre
12	UK1304	Rolls Royce Submarines Limited	Rolls Royce Power Engineering PO Box 2000 Derby DE21 7XX	Tel : +44 (0)1332 795701 E-Mail : Matthew.Fazackerley@rolls-royce.com
13	UK2667	Kiwa Ltd (trading as Kiwa Electrical Compliance)	Unit 8 Woodfieldside Business Park Pontllanfraith Blackwood Gwent NP12 2DG	Tel : +44 (0)1495 229219 E-Mail : ginnie.baker@kiwa.com Website : www.kiwa.co.uk
14	UK8955	Malvern Optical Limited	Building 71 Pershore Airfield Long Lane Throckmorton WR10 2JH	Tel : +44 (0)1386 553188 E-Mail : rmheath@malvernoptical.co.uk Website : www.malvernoptical.co.uk



15	UK9412	dB Technology (Cambridge) Limited	Radio Test Site Twentyence Road Cottenham Cambridge CB24 8PS	Tel : +44 (0)1954 251 974 E-Mail : mail@dbtechnology.co.uk Website : www.dbtechnology.co.uk
16	UK1116	SGS United Kingdom Limited	South Industrial Estate Bowburn County Durham DH6 5AD	Tel : +44 (0)191 377 2000 E-Mail : Andrew.Nicholson@sgs.com Website : www.uk.sgs.com
17	UK2459	Visteon Engineering Services Limited	31 Springfield Lyons Approach Chelmsford CM2 5LB	Tel : +44 (0)1245 395224 E-Mail : cbennet3@visteon.com Website : www.visteon.com
18	UK2360	RN Electronics Ltd	Arnolds Court Arnolds Farm Lane Mountrissing Brentwood Essex CM13 1UT	Tel : +44 (0)1277 352 219 E-Mail : clint@RNelectronics.com Website : www.RNelectronics.com
19	UK0029	Intertek Testing & Certification Ltd	Unit D Imperial Park Randalls Way Leatherhead Surrey KT22 7TS	Tel : +44 (0)1372 370900 Email : alan.reynard@intertek.com Website : www.intertek.com
20	UK4413	MS Testing – a trading division of Mariner Systems (UK) Ltd	5 Maple Way Aycliffe Industrial Park Newton Aycliffe Co Durham DL5 6BF	Tel : +44 (0)1325 321366 E-Mail : info@mstesting.co.uk Website : www.mstesting.co.uk
21	UK2389	Plantronics Limited trading as Poly	Singleton Court Business Centre Wonastow Road Industrial Estate (West) Monmouth Monmouthshire NP25 5JA	Tel : +44 (0)1753-723387 E-Mail : Digby.Rusling@poly.com Website: www.poly.com
22	UK0141	TÜV SÜD Limited (Trading as TÜV SÜD)	Octagon House Concorde Way Segensworth North Fareham Hampshire PO15 5RL	Tel : +44 (0)1489 558258 E-Mail : markjenkins@tuv-sud.co.uk Website : www.tuv-sud.co.uk
			Snitterfield Road Bearley Stratford-upon-Avon Warwickshire CV37 0EX	Tel : +44 (0)1789 731155 Email : john.laydon@tuv-sud.co.uk Website : www.tuv-sud.co.uk
23	UK1574	Eurofins York Ltd	Unit 46 Beeches Industrial Estate Yate South Gloucestershire BS37 5QT	Tel : +44 (0)1454 326998 Email : pauljames@eurofins.com Website : www.yorkemc.com

			Unit 5 Speedwell Road Castleford WF10 5PY	Tel : +44 (0)1977 731173 Email : colingreenfield@eurofins.com Website : www.yorkemc.com
			Unit 1 Grangemouth Technology Park Earls Road Grangemouth FK3 8UZ	Tel : +44 (0)1324 469000 Email : didierbozec@eurofins.com Website : www.yorkemc.com
24	UK10765	Leonardo MW Ltd	Sigma House Christopher Martin Road Basildon Essex SS14 3EL	Tel : +44 (0)1268 883308 E-Mail : andrew.p.price@leonardocompany.com Website : www.leonardocompany.com
25	UK0461	Leonardo MW Limited	2 Crewe Road North Crewe Toll Edinburgh EH5 2XS	Tel : +44 (0)131 343 4242 E-Mail : chris.marshall@leonardocompany.com Website : www.environmentaltestlab.co.uk
26	UK0416	Thales UK Ltd	Manor Royal Crawley West Sussex RH10 9HA	Tel : +44 (0)1293 581824 E-Mail : laura.mcloughlin@uk.thalesgroup.com
27	UK4670	Hi Gain Limited T/A Phasix ESD	Unit 14 Woodlea Park Station Approach Medstead Hampshire GU34 5AZ	Tel : +44 (0)1420 565634 E-Mail : carl.simon@phasix.co.uk Website : www.phasix.co.uk
28	UK4085	UK Grid Solutions Limited	Grid Automation Laboratories St Leonards Building Redhill Business Park Stafford ST16 1WT	Tel : +44 (0)1785 786683 E-Mail : allen.millard@ge.com Website : www.gegridsolutions.com
29	UK0332	ZF Automotive UK Limited	Stratford Road Solihull West Midlands B90 4GW	Tel : +44 (0)1216 273225 E-Mail : Dave.Humphris@trw.com Website : www.conekt.co.uk
30	UK5772	UL International (UK) Ltd	Unit 1 - 3 Horizon Kingsland Business Park Wade Road Basingstoke Hampshire RG24 8AH	Tel : +44 (0)1256 312100 Email : Neil.Friggi@ul.com Website : www.ul-europe.com
31	UK0578	BRE GLOBAL LIMITED Incorporating LPC	Bucknalls Lane Garston Watford WD25 9XX	Tel : +44 (0)1923 665114 E-Mail : prattm@bre.co.uk



		Testing, BRE Testing		Website : www.bre.co.uk
32	UK1204	3C Test Ltd	Silverstone Technology Park Silverstone Circuit Silverstone Northamptonshire NN12 8GX	Tel : +44 (0)1327 857500 E-Mail : steve.youngman@applus.com Website : www.3ctest.co.uk
33	UK0004	NMO Testing (Part of the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Stanton Avenue Teddington Middlesex TW11 0JZ	Tel : +44 (0)20 8943 7246 E-Mail : mannie.panesar@nmo.b eis.gov.uk Website : www.gov.uk/regulatoryd elivery

## 2. 한-튀니지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은 2020년 8월 13일, 튀니지 정보통신연구센터(CERT\*)와 전파 시험·인증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양국의 제도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 정보통신연구센터(CERT;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 des Télécommunications) : 튀니지 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산하기관으로 ICT 제품의 시험·인증,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 담당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는 수입하는 ICT 제품에 대해서 전파 시험·인증을 튀니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인증 처리에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도 우리나라의 튀니지 ICT제품 수출액은 242억원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기기, 차량용 ICT 제품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는 ICT 분야 기술규정과 시험·인증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공유와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튀니지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시험·평가, 인증서 발급 절차, 기술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튀니지와의 전파 시험·인증 분야 양해각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향후, 상호인정협정(MRA)\* 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튀니지에 수출할 때 현지에 방문 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가 간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국제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튀니지 담당자와 이메일과 국제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튀니지와의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추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국내 ICT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 한-베트남 상호인정협정(MRA) 사례\*를 참고하여, 아프리카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튀니지와의 MRA 추진가능성 검토

\* (한-베트남 MRA) 전파연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PTQC)의 MoU를 통해 양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02.4.19.),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과 MRA를 체결한 바 있음('05.12.9.)

그림7. 한-튀니지 양해각서에 따른 전파시험 인증 협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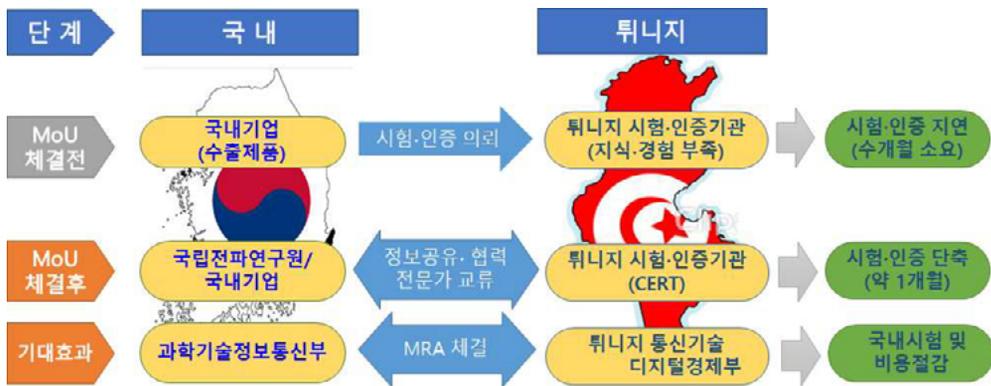


표12. 튀니지 수출품목 중 주요 시험 인증 현황

구분	주요 시험·인증 대상
무선제품 분야	휴대폰, 무선인터넷, 무선충전기, 텔레매틱스, 차량용오디오, 태블릿, 차량용레이더, 차량용블루투스, 개인휴대단말기(PDA), 차량용헤드유닛, 단말기기, 저전력 무선기기, LAN 및 WAN 사용 전송장비 등 무선제품

표13. 한-튀니지 ICT 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수출	21,048,630	21,123,166	20,793,454
수입	3,827,253	3,958,765	3,579,779
무역수지	17,221,377	17,164,401	17,213,675

### 3. 한-인도네시아 MRA 추진 현황

2019년도 6월에 인도네시아와 MRA 추진을 협의 하였다. 인도네시아측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MRA 추진을 적극 희망하며, 추진 범위는 유·무선 및 EMC 분야로 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기술기준과 측정장비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할 것이며, 최신화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유·무선 및 EMC분야(전자파장해(EMI)로 한정)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EMS, SAR, EMF 등 기타 분야의 경우 임의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자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 외국\*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 \* 외국시험기관 : GCF(유럽통신협회) 또는 CTIA(미국통신협회)에 가입된 외국 시험기관  
이어야 하며, 국내 가입 시험기관은 HCT, SGS, KTL, 삼성 등 4개
-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ternet Association) : 미국 통신연합협회
-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유럽이동통신인증단체

#### < 한-인도네시아 MRA 추진 경과 >

- **APEC TEL MRA 근거, 인니 규제기관(정보통신기술부, MCIT)과의 MRA 1단계 체결 관련 실무 협의 실시**(‘19.6월, 인도네시아)
- **국내 이해관계자 대상 1차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확정**(‘19.7.10, 7.17)
  - ※ 국내 수출기업 및 시험기관 모두 신속한 추진을 희망하며,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인체보호 등 전 분야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 **인니 규제기관과 2차 실무 협의 실시**(‘19.10월, APEC TEL 정례회의)
  - ※ 전 분야에 대해 MRA 체결하는 것으로 의견 교환하였으며, MRA 체결 이후 실제 발효 전까지 신뢰구축기간(12~24개월)을 두도록 협의
- **우리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협정 초안에 대해 인니측 검토 의견 회신**(‘20.1.10)
  - ※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인체보호 등 전 분야에 대해 MRA 체결하고, 인니측의 의견에 따라 신뢰구축기간을 12개월로 하도록 전파연과 합의(‘20.1.16)
- **양국간 이메일 협의**
  - ※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부처간 협의에 따른 내부 검토중임을 회신(~ 현재)



2020년 9월 17일에 산업부 주관으로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국의 규제 협력을 위한 상호 인증제도를 소개하였다. 국립전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사전 발표 요청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현황을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도 인도네시아 유무선 기술기준 목록, 시험기관 현황을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해외 인정 시험기관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

- \* 인도네시아는 시험 수행능력 부족으로 일부 해외 시험기관을 인정하여 시험을 허용하고 있으나 매년 해당 해외 시험기관을 축소 발표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가 인정한 16개 해외 시험기관 중 한국은 4개(HCT, KTL, SGS, 삼성(수원)) 국내시험기관이 국내에서 시험가능토록 인정되고 있음

양국은 화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	소 속	성명	비고
인니	BSN	Konny Sagala	적합성평가국 국장
인니	BSN	Riszki Septiani	
인니	정보통신부	Anak Agung Gede Oka	유무선제도 발표
인니	정보통신부	Cendrawasih A Putri	

2019년 10월에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지속하였다. 인도네시아측과 MRA 체결 의사를 재확인하고, 체결 범위 등을 포함하여 주요 협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을 상호 협의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접수되는 외국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자국 내 중개인(Agent)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현지에서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검토기간이 존재한다.

시험성적서 통과 이후에는, 인증신청 및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 1일 내 인증서 발급(한국의 경우 5일 이내 소요)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측은 MRA 1단계 문서 및 시험신청 시 제출되는 모든 서류(시험성적서 등)에 자국 언어가 아닌 영어 사용을 요청하였다. MRA 1단계 체결 이후에는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인증 전에 추가적인 검토절차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측은 기존에 MRA 미(未)체결국 시험기관(121개)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했으나, 최근에 이를 121개에서 16개 시험기관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우리측은 유·무선 및 EMC·SAR 등 방송통신관련 전체 분야에 대하여 MRA

체결을 요청했으며, 인니측 역시 SAR 등 전체분야 체결에 합의했으며, SAR 분야는 현재 임의인증 대상으로 곧 강제 인증화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MRA 체결 이후 실제 발효 전까지 인니측 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구축기간을 제안하였으며 인니측은 한국과의 MRA를 예산 확보의 근거로 활용하여 기술기준을 한국 수준으로 최신화 하는 데에 1년 정도 예상된다고 답변하였다. 2021년도에는 한-인도네시아 MRA 추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측은 미국·유럽 통신협회(CTIA\*·GCF\*\*)에서 지정받은 한국 내 시험기관 HCT, SGS, 삼성 등 4개)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 지정 시험기관 44개는 협회 가입 유지비(매년 유지비용 약 1억원 소요) 및 장비구축(시험설비 추가 구축, 통신망 프로토콜 접속시험, 안테나특성검사) 등의 어려움으로 CTIA 및 GCF에 가입하지 않음

-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CTIA 및 GCF 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인정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음

\*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 Internet Association) : 미국 통신연합협회

\*\*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유럽이동통신인증포럼

**표14.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 참석자 (한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표준청

No.	시 간	내 용	발표자
2	13:40~14:20	·SNI 인증제도 최신 동향 및 확대계획	인니 BSN
3	14:20~15:00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B50) 향후 동향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4	15:00~15:30	·한국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 현황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5	15:30~16:10	·인도네시아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규제 제정계획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6	16:10~16:40	·한국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 소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7	16:40~16:50	·Coffee Break	
8	16:50~17:30	·인도네시아 유무선 기술기준 소개	인니 정보통신부
9	17:30~18:00	·한국 유무선 기술기준 현황 소개	한국 국립전파연구원
10	18:00~18:40	·인도네시아 연비/CO <sub>2</sub> 측정 및 신고기준 제정 계획	인니 교통부
11	18:40~19:00	·마무리	



그림8. 한-인니 기술규제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개최 사진

<p>Arini Widyastuti(BSN) 표준/적합성평가 기반 기술규정</p>	<p>Anak Agung Gede Oka(정보통신부) 유무선장치 적합성평가 및 규제현황</p>
<p>전철환 책임(한국석유관리원) 바이오디젤의무화제도</p>	<p>임도연 부장(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등급제도</p>
<p>안형배 연구사(국립전파연구원) 유무선 통신기기 기술규제 현황</p>	<p>한-인니 기술규제협력 세미나</p>

인도네시아측은 미국·유럽 통신협회(CTIA, GCF)에서 지정받은 한국 내 시험기관(HCT, SGS, 삼성 등 4개)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아래 내용과 같이 인도네시아 언어로 공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가 시험을 인정한 해외 시험기관 현황

NO.	NAMA BALAI UJI LUAR NEGERI	LOKASI
1.	BTL Inc (Guangdong)	No.3 Jinshagang 1st Road ShiXia, Dalang Town, Guangdong, China
2.	Bureau Veritas 7Layers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No. B102, Dazhu Chuangxin Mansion, North of Beihuan Avenue, North Area, Hi-Tech Industrial Park, Nanshan District, Shenzhen, Guangdong, China
3.	Global CS Center Samsung Electronics Co., Ltd.	129, Samsung-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677, South Korea
4.	HCT Co., Ltd	74, Seoicheon-Ro, 578 Beon-Gil, Majang-Myeon, Incheon-Si, Gyeonggi-Do, South Korea
5.	Korea Testing Laboratory (Ansan)	87, Digital-ro 26-gil, Gugo-Gu Seoul 08389, South Korea
6.	SGS Korea Co Ltd (Gunpo)	4, LS-ro, 182beon-gil, gunpo-si, Gyeonggi-Do, South Korea
7.	SGS Taiwan Ltd (Taipei)	1F, No. 8 Alley 15. Lane 120, Sec. 1, NeiHu RD., NeiHu District, Taipei City 24803, Taiwan
8.	SGS-CSTC Standards Technical Services Co Ltd (Shenzhen)	No. 1 Workshop, M-10, Middle Section, Science & Technology Park, Shenzhen, Guangdong, China
9.	Shenzhen Academy of Metrology and Quality Inspection	Bldg. of Academy of Metrology & Quality Inspection, Xili, Shenzhen, China
10.	Shenzhen BALUN Technology Co Ltd	Block B, FL 1, Baish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hahe Xi Road, Nanshan District ShenZhen, GuangDong Province Shenzhen 518055, China

NO.	NAMA BALAI UJI LUAR NEGERI	LOKASI
11.	Sporton International Inc., (Kunshan)	No. 1098, Pengxi North Road Kunshan Economic Development Zone Jiangsu, China
12.	Sporton International Inc., (Shenzhen)	1/F., 2/F., Building 5, Shiling Industrial Zone Xinwei Village, Xili, Nanshan, Shenzhen, Guangdong, China
13.	Sporton International Inc., (Tao Yuan Hsien I)	No.52, Hwa Ya 1st Rd.,Kwei-Shan Dist.,Tao Yuan City, Taiwan
14.	TA Technology Co Ltd, Shanghai	No.145,Jintang Rd, Pudong Shanghai 201201, China
15.	TUV Rheinland Co Ltd, Shenzhen	1F East & 2-4F, Cybio Technology Building No.1, No.16 Kejibei 2nd Road, High-Tech Industrial Park North Nanshan District Shenzhen 518057, China
16.	UL Verification Services Inc. (Fremont)	47173 Benicia Street, Fremont, California 94538, United States

DIREKTUR JENDERAL SUMBER DAYA DAN PERANGKAT POS DAN INFORMATIKA,



ISMAIL



#### 4. 한-유럽연합(EU) FTA MRA 추진현황

2015년도에 EU집행위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EU 무선기기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EU측은 FTA 협상 당시에는 EU역내 국가간에 무선기기 지침 관련 일치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부속서 2-B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FTA 협정문 제7.1조(이행 및 협력)에 포함의지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선기기 시험분야가 부속서 2B의 적용범위에 추가되거나 또는 상호인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EU측이 제안한 무선기기 시험분야 관련 규정을 FTA 협정문 부속서 2-B(전기전자)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검토 수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EU 간의 기술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2016년에 개최된 한-EU 무선분야 상호인정 협의에서 EU통상국장은EU측이 2015년에 제안한 한-EU 무선분야 상호인정 협의에 대한 추가 진전이 없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EU측 산업체에서 한-EU 무선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EU측은 무선분야 추가 확대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측에 제시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 무선분야 주요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제도 및 기술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등 공감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EU측은 우리 입장을 수용하며, 2017년 9월에 무선분야 전문가 영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측은 무선기기 관련 규제를 소개하였으며 EU측은 회의시간 부족으로 추후 관련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한-EU 무선분야 상호인정 협의에서 EU측이 FTA 협정문을 근거로 무선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확대를 요구함에 따른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한-EU FTA 부록 2B(양 당사자는 무선주파수 기기와 관련된 공동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을 고려한다.)

8) 우리나라는 유럽측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 시험 기관에서 무선기기 시험이 가능하나, 유럽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유럽 내 시험이 불가하므로 FTA 협정문 2-B(전기전자)에 따른 무선분야 추가 확대를 희망

EU측은 전기안전인증 규제 완화, 무선 분야 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韓측은 EU의 무선기기 지침(RED), 에코 디자인, 에너지 라벨링,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이슈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우리측은 EU측의 무선분야 협력 확대요구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였다.

EU측은 무선기기(Radio Equipment)에 대해 EU 제조기업과 한국측 기업이 상호 동등하지 않음을 2015년부터 지적해왔다고 설명하였다.

※ 한국측 제조사는 EU 수출시 국내에서 무선 분야 시험이 가능하나, EU측 제조사는 한국 수출시 EU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점은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

\* 한-EU FTA 부속서 2-나(전자제품) 제 7조(이행 및 협력) : 무선주파수 기기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규제문제의 공동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을 고려한다.

전기안전(Safety), 전자과적합성(EMC) 분야와 마찬가지로, EU측 제조사가 한국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EU 역내에서 무선분야 시험 실시하도록 상호인정(1단계)을 요구하였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상호간 제도적 차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보 교류 차원에서는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각국의 주파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무선 분야 기술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자기적합 선언을 채택한 EU와 달리 한국은 전파 혼·간섭을 고려하여 국내법상 적합인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자기적합선언(SDoC) : 제1자 적합성평가, 인증(Certification) : 제3자 적합성평가

특히, EU 시장감시기관\*이 발표한 무선기기 부적합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국내 유입시 전파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상호간 제도적 차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보 교류 차원에서는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Administrative Cooperation Groups (AdCos)

EU측은 한국의 무선분야 적합성평가 제도·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 제조사의 한국 수출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EU 역내시험소를 인정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EU측의 요구에 앞서, 전문가들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무선 분야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국립전파연구원, 시험기관협회의 전문가들이, EU측도 NB(Notified Body), 시험소들이 워크숍을 참석하도록 추진하였다.

2019년 9월에 한-EU FTA 대응 무선분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국은 각 각 MRA 추진현황(MRA 1· 2단계) 및 무선기술 동향을 소개하였다.



EU측은 한-EU FTA 협정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무선분야 이외에 SAR(인체안전) 분야도 한국측과 상호인정 협의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전통적 MRA와 구분되는 강화된(Enhanced) MRA 형태인 EU-스위스 MRA(양국이 동일한 기술기준 도입), 건축·기계 등까지 분야를 확대한 EU-캐나다 CETA MRA 소개(기존 MRA 2단계를 개정) 등을 소개하였다.

\* EU MRA 체결국: 미국('99), 캐나다('17), 일본('01), 이스라엘('99), 호주('12), 뉴질랜드('12), 스위스('06)

한국측은 한-캐나다 MRA 2단계(2017) 등 MRA 현황, 무선분야 및 기술기준을 소개하였다. EU측의 사후관리는, 28개의 각 EU회원국별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U 위원회는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양국이 상대국의 MRA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ISO/IEC 17065 및 ISO/IEC 17025)이 적용되며, EU회원국은 모두 인증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EU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대리인은 각 EU회원국이 요청하는 적합성평가 시험에 대응하고, 위험도(Risk) 제거 및 제품 사후관리 등을 위해 10년 동안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 무선지침(REDE) 제1장 제2조(대리인 용어정의) 및 제2장(관련규정)에 명시

EU의 시험인증비용은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시험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EU의 제품 사후관리는 EU내 각 국가별로 수행하며, EU 위원회는 각 국가가 수행한 사후관리 결과를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EU의 제조사는 비조화표준(Non Harmonized Standard) 제품 인증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 위험도(Risk)를 줄이기 위해서 조화표준(Harmonized Standard)에 대해서도 NB에 인증을 신청하고 있다.

※ EU는 SDoC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조화표준에 대해서는 무선 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Risk를 줄이기 위해서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한 인증서 발급도 수행

2020년 11월에 한-EU FTA 규제대화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EU측은 무선분야 상호 인정협정문(초안) 마련을 제안하고 한-EU 무선분야의 실질적인 규정 개선이 언제쯤 되는지 구체적인 변화 일정 제시를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한-EU 공동 워크샵 개최(12.1) 준비(발표 내용, 시간 등) 상호협약 완료가 필요하고 한-EU 공동 워크샵에서 무선제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내부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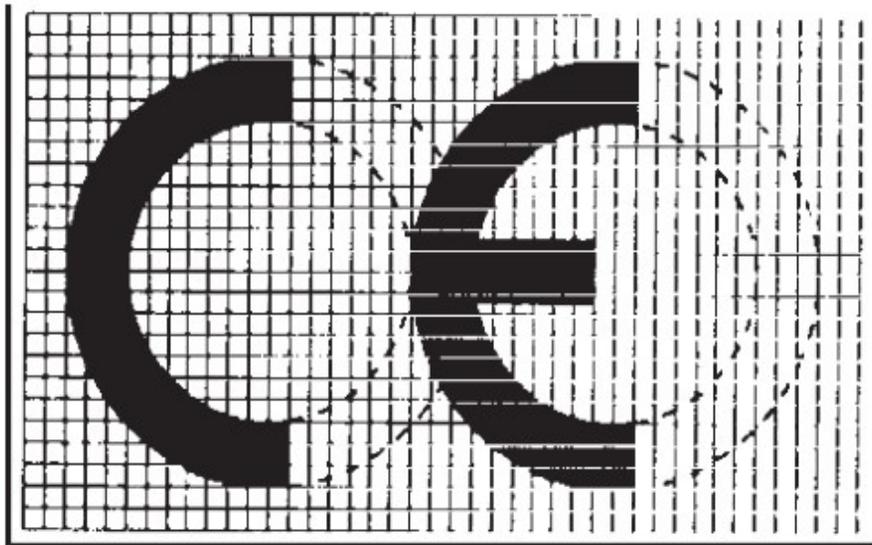
2020년 12월에 한-EU MRA 영상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EU 양측은 유럽의 무선규정\*(RED), 한국의 5G, SAR 제도현황 등을 상호 소개하고 이해하는 정보교환을 수행하였다.

- \* EU측은 세탁기, 냉장고 등 21개 항목의 가전제품에 대하여 무선규정을 신규로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관련 제품목록을 제공

한편, 유럽연합에 수출을 위한 CE 마크 현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CE 마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CE’ 이니셜로 구성된다:
2. CE 마크를 축소 혹은 확대할 경우, 제1항의 모눈양식에 그려진 도안을 따른다.
3. 해당 법률에서 특정 치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CE 마크는 최소 크기 5 mm를 유지해야 한다.

표15. CE 공식마크





# 제3장

# 결론





## 제3장 결론

최근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에 존재하는 기술규정의 차이가 자유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FTA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이한 기술규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의 장벽이 되던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가 수행 하던 시험이나 인증의 내용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동일 제품에 대하여 국가별로 시험인증을 수행할 때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제품의 무역 흐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세계적 인증환경 변화 및 무역 활성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캐나다, 영국, 튀니지,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 기술규정의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협정(MRA)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효율적인 협상 및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세계적 인증환경 변화 및 무역 활성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술규정의 차이가 있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효율적인 협상을 도모하여 2001년 MRA 1단계 체결이후 약 20년만에 방송통신분야 MRA 2단계 최초 체결( '17.12월) 및 이행( '19.6월) 이라는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체결된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는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으로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지식 및 전파 인증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까지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차량용 블랙박스, 라벨프린터 등 7건에 대하여 캐나다 인증을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수행하여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캐나다와의 MRA 2단계 확대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 인도네시아, 튀니지 등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한-캐나다 양국가의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양국이 기존에 상호인정 체결을 완료한 국가(한국:5개 국가, 캐나다:15개 국가) 등 중복 국가를 제외한 양국의 17개 국가에 소재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도 한-캐나다 양국가에서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측이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측과 협의를 통해 일본, 중국 등 17개 국가 시험기관으로 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원을 통해 캐나다 인증서(IC)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한-영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여 한-영 FTA 협정문을 체결('19.8.22.)하였다. 한-영국 FTA 협정문은 기존에 체결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였으며 한-영국 FTA 협정문 부속서에 한-영국 EMC분야 상호인정협정(MRA)을 포함하였다. 한-영국 FTA 체결에 따라 협정문 시행을 위해서 고시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은 한-영 FTA가 발효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2020년 8월 13일에 튀니지 정보통신연구센터(CERT)와 전파시험·인증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양국의 제도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는 수입하는 ICT 제품에 대해서 전파 시험·인증은 튀니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인증 처리에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는 ICT 분야 기술규정과 시험·인증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공유와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튀니지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시험·평가, 인증서 발급 절차, 기술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세미나를 2020년 9월 17일에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사전 발표 요청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현황을 소개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도 인도네시아 유무선 기술기준 현황을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해외 시험기관을 인정하여 시험을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매년 인도네시아가 인정한 해외 시험기관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에도 한-인도네시아간 MRA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FTA 협상 당시에는 EU역내 국가간에 무선기기 지침 관련 일치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부속서 2-B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FTA 협정문 제7.1조(이행 및 협력)에 포함의지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선기기 시험분야가 부속서 2B의 적용범위에 추가되거나 또는 상호인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 한-EU FTA 규제대화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EU측은 무선분야 상호인정협정문(초안) 마련 제안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2020년 12월에 개최하는 한-EU 공동 워크샵에서 무선제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내부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20년 12월에 한-EU MRA 영상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한-EU 양측은 유럽의 무선규정(REG), 한국의 5G, SAR 제도현황 등을 상호 소개하고 이해하는 정보교환을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EU측 요청에 대한 한-EU 무선분야의 규정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MRA 국내정책을 고려하여 EU, 미국, 인도네시아, 튀니지 등 국가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향후 국가 간 MRA 대상국가 확대 협의 추진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부록1**

**유럽공동체(EU) 적합성평가 제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번호 768/2008/EC, 2008년 7월 9일**  
**제품 마케팅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및 이사회 결정**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 특히 제95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제안사항 및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지역위원회와 협의 후 조약 제2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 1) CE 마킹은 제품이 공동체 조화법률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적합성 표시이다. 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공동체 조화 법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다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2) 제조업자와 사용자가 CE 마킹을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이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한 제품임을 보증하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 3) CE 마킹의 효과를 더 잘 평가하고 남용 방지 전략을 정의하기 위해 위원회는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유럽 의회에 보고한다.
- 4) CE 마킹은 그 부착이 공동체 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러한 조건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고 법적 수단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CE 마킹 위반 및 남용을 추적해야 한다.

**제4조**

**적합성평가 절차**

공동체 조화법률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속서 II에서 정하고 명시된 모듈 중에서 선택한다.

관련 모듈이 제품 유형에 적합한지 여부, 상품이 수반하는 위험의 성격, 그러한 위험 유형/정도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 정도

제3자의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부속서 II에 명시된 품질보증과 제품 인증 모듈 중 선택해야 하는 필요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위험과 관련하여 너무 부담이 되는 모듈 부과를 피해야 하는 필요 제품이 본 결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공동체 행위의 대상인 경우, 입법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항에 언급된 모듈은 해당 제품에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제작 제품 및 소형 시리즈 생산의 경우,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기술적, 행정적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제1항에 언급된 모듈 적용 시 그리고 해당되고 관련이 있는 경우, 법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기술문서 관련, 모듈에 이미 규정된 정보 외 추가 정보 요청



- 제조업자 및/또는 인증기관이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관 관련, 모듈에 명시된 기간 변경
- 테스트 시행(공인된 사내기관 또는 제조업자가 선택한 인증기관) 관련, 제조업자의 선택 명시
- 제품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한 요건을 갖춘 제품의 적합성 확인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할지, 모든 제품의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할지, 통계적 기반의 제품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할지 관련 제조업자의 선택 명시
- 유효 기간이 표시된 EC유형 시험 증서 제공
- EC유형 심사 증서의 경우, 적합성평가 및 서비스 중인(in-service) 관리 관련 정보를 명시 또는 그 부속서에 포함
- 인증당국(notifying authorities)에 안내할 인증기관의 의무에 관한 다양한 방식 제공
- 인증기관이 정기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빈도 지정
- 제1항에 언급된 모듈 적용 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법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제품 검사 및/또는 검증 수행 시, 관련 제품, 적절한 테스트, 적절한 샘플링 계획, 적용될 통계 방식 운영 특성 및 인증기관 및/또는 제조업자가 취할 조치 결정
- EC유형 검사 시행 시 적절한 방식(디자인 유형, 생산 유형, 디자인/생산 유형)과 필요한 표본 결정
-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5조**

**EC 적합성 선언**

공동체 조화법률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품 관련 요건을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EC 적합성 선언), 해당 법률에서는 그러한 선언과 관련된 공동체 조화법률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참고문서가 존재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공동체 행위에 대해 단일 선언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

**적합성평가**

공동체 조화법률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 공공기관, 제조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공동체 조화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에서 적합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이 기술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기관은 본 결정에서 인증기관에 대하여 설정된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E 마킹 일반원칙**

CE 마킹은 규정 (EC) No 765/2008 제30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 제R12조

### CE 마킹 부착 규칙 및 조건

- 1) CE 마킹은 제품 또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눈에 잘 띄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 상 그러한 부착이 불가하거나 보증되지 않는 경우, 포장재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 2) CE 마킹은 제품이 시장에 반입되기 전 부착되어야 한다. CE 마킹 뒤에는 특별한 위험이나 사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기타 표시를 표기할 수 있다.
- 3) CE 마킹 뒤에는 인증기관의 식별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해당 인증기관은 생산 관리 단계에 관여한다. 인증기관 식별번호는 해당 기관이 부착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공인 대리인이 부착한다.
- 4) 회원국은 기존 메커니즘을 토대로 CE 마킹을 관리하는 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고, 해당 마킹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은 심각한 침해 발생 시 형사제재를 포함 침해 관련자를 처벌한다. 이러한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부적절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 제R17조 인증기관 관련 요건

- 1) 인증(notification)의 목적 상, 적합성평가 기관은 제2 ~ 11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 적합성평가 기관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지녀야 한다.
- 3) 적합성평가 기관은 조직 또는 제품과 별개인 독립적 제3기관이어야 한다.  
평가 제품의 설계, 제조, 제공, 조립, 사용/유지보수 관련 사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협회 또는 전문 연맹에 속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독립성을 지니고 이해가 상충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4) 평가 제품의 설계자, 제조업자, 공급자, 설치자, 구매자, 소유자, 사용자/유지보수자는 적합성평가 기관, 최고 경영진 및 적합성평가 담당자가 될 수 없다. 해당 당사자의 공인 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적합성평가 기관은 평가 제품을 기관 운영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평가 기관, 최고 경영진 및 평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은 해당 제품의 설계, 제조/시공, 마케팅, 설치, 사용/유지 보수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해당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 기관, 최고 경영진 및 평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은 통보되는 적합성평가 활동 관련 판단의 독립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히 컨설팅 서비스에 적용된다.

적합성평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회사 또는 하도급 업체 활동이 적합성평가 활동의 기밀성, 객관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5) 적합성평가 기관 및 해당 기관의 직원은 관련 분야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가적 진정성(professional integrity)과 기술적 역량을 지니고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평가 활동의 결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압력이나 유인책(특히 재정적 유인책)을 받아서도 안 된다.
- 6) 적합성평가 기관은 통보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적합성평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다른 기관에서 대신하여 수행하던, 해당 적합성평가 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 관련 부분 참조]에서 부여된 모든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각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통보된 제품 유형 또는 범주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기관은 다음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식과 충분하고 적절한 경험을 갖춘 직원 적합성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재생산(reproduction)성을 보장하는 적합성평가 수행 절차 설명.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기타 활동을 구분하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 사업 규모, 운영 부문, 구조, 해당 제품 기술의 복잡성 정도, 대량/연속 생산 절차 성격을 고려한 수행 절차  
 적합성평가 활동 관련 기술 및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올바르게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장비,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7) 적합성평가 담당자는 다음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적합성평가 기관에 통지되는 모든 적합성평가 활동을 포괄하는 기술 및 직업 훈련
- 8) 평가 요건 관련 지식, 평가 수행을 위한 권한  
 관련 조화표준, 공동체 조화 법률 관련 조항, 시행 규정 관련 요건에 대한 지식과 이해
- 9) 평가 수행 증명 증서, 기록, 보고서 작성 능력  
 적합성평가 기관, 최고 경영진 및 평가 인력의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10) 적합성평가 기관 최고 경영진 및 담당자의 보수는 수행된 평가 횟수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 11) 국내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지거나 회원국이 직접 적합성평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적합성평가 기관은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 12) 적합성평가 기관 직원은 업무 수행 도중 습득한 모든 정보 또는 권한을 평가가 수행된 회원국 책임당국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법률의 관련 부분 참조] 및 관련 국내법 조항에 따라 기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 13) 적합성평가 기관은 해당 공동체 조화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련 표준화 활동과 인증기관 조정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평가 담당자에게 안내하며 활동 결과 생성된 행정 결정 및 문서를 일반 지침에 적용해야 한다.

**제R22조 인증(notification) 신청**

- 1) 적합성평가 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인증당국에 인증(notificatio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신청서에는 해당 기관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 활동, 적합성평가 모듈/제품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적합성평가 기관이 본[법]의 제[R1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국가인정기관 발행 인정 증서(accreditation certificate) (해당되는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
- 3) 적합성평가 기관이 인정 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증당국에 제[R17]조에 규정된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 인정 및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제R23조 인증(notification) 절차

- 1) 인증당국은 제[R1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 2) 인증당국은 위원회에서 개발, 관리하는 전자 인증(notific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 3) 인증(notification)은 적합성평가 활동, 적합성평가 모듈 및 관련 제품, 역량 관련 대한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4) 인증(notification)이 제[R22 (2)]조에 언급된 인정 증서를 토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인증 당국은 위원회 및 기타 회원국에 적합성평가 기관의 역량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R1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위원회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 증서가 사용된 경우 인증(notification) 2주 이내, 사용되지 않은 경우 2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증기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만 본[법]의 목적상 인증기관으로 간주된다.

인증(notification) 관련 추후 변경사항은 위원회 및 기타 회원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 제R24조 인증기관 식별번호 및 목록

- 1) 위원회는 인증기관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2) 해당 기관이 여러 공동체 행위에 따라 통보되는 경우에도 단일 번호를 할당한다.
- 3) 위원회는 할당된 식별번호와 통보된 활동을 포함하여 본[법]에 따라 통보된 기관 목록을 공개한다.

위원회는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제R25조 인증(notification) 변경

- 1) 인증당국이 인증기관에서 제[R17]조에 규정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이를 안내 받은 경우, 인증당국은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인증(notification)을 제한, 정지 또는 철회하고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이를 즉시 알린다.

- 2) 인증(notification)을 제한, 중지 또는 철회하거나 인증기관에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인증(notifying) 회원국은 다른 인증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과일을 처리하거나 요청에 따라 담당 인증 및 사후관리기관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R26조 인증기관의 역량 문제(challenge)**

- 1) 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역량 또는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요건 및 책임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해 의심되는 모든 경우를 조사한다.
- 2) 인증(notifying) 회원국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인증(notification) 근거 또는 관련 기관의 역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3)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민감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한다.  
인증기관에서 인증(notification)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인증(notifying) 회원국에 알리고, 인증(notification) 취소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제R27조 인증기관의 운영상의 의무**

- 1) 인증기관은 [법률 관련 부분]에서 규정된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한다.
- 2) 적합성평가는 관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적합성평가 기관은 사업 규모, 사업 운영 부문, 구조, 해당 제품 기술의 복잡성 정도, 대량/연속 생산 절차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 3)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본[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과 보호수준을 따른다.
- 4) 제조업자가 [법률 관련 부분] 또는 해당 조화표준/기술사양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조업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적합성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증서 발급 후 적합성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품이 더 이상 적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된 경우, 인증기관은 제조업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증서를 정지 또는 철회한다.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필요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은 증서를 제한, 중단 또는 철회한다.

**제R28조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 의무**

- 1) 인증기관은 인증당국에 다음을 안내한다.
  - 증서 거부, 제한, 정지 또는 회수
  - 인증(notification) 범위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 적합성평가 활동 관련 사후관리기관의 정보 요청 사항

- 요청 시, 인증(notification) 범위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활동, 국경 간 활동 및 하도급을 포함 기타 수행된 활동
- 2) 인증기관은 본[법]에 따라 통지된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사한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에 부정적/긍정적 적합성평가 결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R29조 경험교환**

위원회는 조직을 구성하여 인증(notification) 정책 담당 회원국 국가 당국 간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기관의 조정**

위원회는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공동체 법률]에 따라 통보된 기관 간 적절한 조정 및 협력이 [부문 별 또는 교차 부문 별] 그룹 또는 인증기관 그룹의 형태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회원국은 회원국이 통보한 기관이 직접 또는 지정된 대표를 통해 해당 그룹 또는 그룹의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표: 공동체 법률 적합성평가 절차**

	A. 내부 생산 관리	B. 유형 검사	G. 단위 확인	H. 전체 품질보증
설계				EN ISO 9001:2000 (4)
	제조업자 — 기술문서 보관	제조업자 인증기관 제출 내용 — 기술문서 — 기술 설계 솔루션 적절성에 대한 입증 자료 — 필요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량을 대표하는 표본	제조업자 — 기술문서 제출	제조업자 — 승인된 설계품질 시스템운영 — 기술문서 제출
		인증기관 — 필수요건 적합성 확인 — 기술문서와 입증자료 검토를 통한 기술설계 적절성 평가 — 표본: 필요한 경우 테스트 수행 — EC유형 검사 증서 발행		인증기관 — QS 감시 수행
				H1 인증기관 — 적합성 설계 확인 — EC 설계 검사 증서발행

생산	A. 제조업자 — 필요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C. 유형에 대한 적합성	D. 생산 품질보증	E. 제품품질 보증	F. 제품 검증		
		C.  제조업자 — 승인된 유형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EN ISO 9001:2000 (2)  제조업자 — 생산, 최종 검사 및 테스트를 위한 승인된 품질 시스템 운영 — 승인된 유형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EN ISO 9001:2000 (3)  제조업자 — 최종 검사 및 테스트를 위해 승인된 품질시스템 운영 — 승인된 유형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제조업자 — 승인된 유형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제조업자 — 제품 제출 —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제조업자 — 생산, 최종 검사 및 테스트를 위해 승인된 QS 운영 —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A1. 공인된 사내기관 또는 인증기관 — 제품 특정 측면 테스트	C1. 공인된 사내기관 또는 인증기관 — 제품 특정 측면 테스트	D1. 필요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E1. 필요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F1. 필요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 필수 적합성 표시 부착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A2. — 무작위 제품 확인	C2. — 무작위 제품 확인	— QS 승인 — QS 감시 시행	— QS 승인 — QS 감시 시행	— 필요요건에 대한 적합성확인 — 적합성 증서 발행	— 필요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 — 적합성 증서 발행	— QS 감시 시행	

**부록2**

**EU 상호인정협정(MRA) 및 적합성평가 의정서의 이행**

Brussels, 24 July 1998  
DG III/B/4/GM D(98)

1. Certif.98/7-EN

본 각서의 목적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및 유럽 적합성평가의정서(이하 PECA)의이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무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강구하고 동 협정 발효 후 및 이행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A. 배경**

MRA/PECA는 수입국가가 수출국가에서 발급된 법률적/규제적 요구사항 준수 인증서를 수락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PECA는 주로 가입 후보국의 중요한 가입절차 단계 및 가입 후보국에서의 유럽연합 기술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관할당국은 추가적인 기술 평가/행정적 개입없이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일방 계약 당사국의 관할당국이 지정하고 타방 계약당사국이 인정한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인증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PECA는 중동부 유럽국가(CEEC)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인증기관(Notified bodies)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MRA의 원칙은 '적합성평가의 글로벌 접근방법'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의결(1989년 12월 21일)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신문(1989년 6월 15일)에 명시되어 있다. MRA 협상은 유럽연합 이사회 결정(1992년 9월 21일)을 기반으로 하며, 동 이사회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증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유럽연합 공동체와 제3국간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PECA의 원칙은 유럽연합 역내시장 이사회(Internal Market Council) 가이드라인(1997년 3월 13일)과 유럽연합 상임대표위원회(COREPER)에 의해 채택된 협상 가이드라인(1997년 6월 4일)에 명시되어 있다.

본 각서에서 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CAB)” 또는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Designated Bodies)”을 가리키며,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당국은 “지정 관할당국“을 가리킨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정 관할당국은 회원국의 국가 당국이며,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관할하는 당국이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부여한 MRA 협상 권한은 유럽연합의 공통 규범을 따르지 않는 지역(EU Non-harmonised Are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정보의 제공, 해외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인정하기 위한 국내 법률의 변경, 지정 기준 준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직접적인 책임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 B. MRA/PECA의 이행

### <일반>

MRA/PECA의 핵심은 계약 당사국의 지정 관할당국이 적절한 적합성평가기관(CAB)을 찾아내서 지정하여 동 협정의 규정에 명시된 타방 계약당사국의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동 적합성평가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MRA/PECA의 기본 파트에 명시되어 있지만(즉, 지정 기준과 절차는 모든 국가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면이 있고 MRA의 일반적인 목표와 일치하지만), 특정 분야의 추가 요소는 동 협정의 업종별 부속서에 명시될 수도 있다.

PECA의 동 지정 기준과 절차는 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에 명시된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정확히 일치하며 해당 가입 후보국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MRA 적용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호주 (1996년 7월 시행) : 기계,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기기,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압력용기, 자동차 및 부품, 통신용 단말장비(TTE).
- 뉴질랜드 (1996년 7월 시행) : 기계,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기기,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압력용기, 통신용 단말장비(TTE).
- 미국 (1997년 6월 시행) : 통신용 단말장비(TTE),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기기, 의료기기, 오락용 소형 선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중: 파스너(fastener) + 수의학용 생물약품).
- 캐나다 (1997년 6월 시행): 통신 기기,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기기, 의료기기, 오락용 소형 선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일본 (1995년 5월 협상 개시) : 통신용 단말장비(TTE),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기기, 압력용기, 의료기기.
- 스위스 (1995년 1월 협상 개시) : MRA 적용 대상 분야는 품목 및 위험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 지침(New Approach Directives)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바와 동일하다.

MRA/PECA를 적절하게 이행하려면, 쌍방 계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동 협정이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다양한 책임 중에서도 특히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철회를 관할하여야 한다.

MRA의 경우, 공동위원회는 특정 협정을 위해 업종별 부속서에 따라 공동업종그룹(Joint Sectoral Groups)을 추가 구성하여 특정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관할하여야 한다.

PECA의 경우, 공동위원회는 유럽연합 준회원국 가입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업종별 지침에 따라 설립된 실무 그룹에 대한 제3국 대표의 가입을 심사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회와 공동업종그룹에서 회원국을 대표한다. 이 사항은 유럽연합 상호인정협정 이사회의 결정 이후 동 협정의 일상적 관리 또는 수정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로마 조약 제113조에 따라 설립된 유럽연합

상호인정협정 이사회의 특별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안된 역내 의사결정 매커니즘에 따른 것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무기관의 역할

#### <책임>

MRA/PECA의 이행 활동과 관련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무기관의 목표는 공동위원회와 공동업종그룹이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국 및 PECA 관할당국이 지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연합 인정기구가 해당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술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무기관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요 책임이 포함된다:

공동위원회와 공동업종그룹의 포럼 준비를 포함하여 공동위원회와 공동업종그룹에서 유럽연합 공동체를 대표한다.

필요한 경우, 제3자 요구사항, 문서 검토 및 현장 평가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통해 회원국별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프로세스를 지원 및 추적한다.

약품규제기관과 제3국 관할당국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한다.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식별번호 지정 등의) 지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MRA/PECA에 규정된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동 협정에 규정된 법/규제/행정 규정의 수정을 포함하여 규정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계약당사자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국가 관할당국과의 접촉을 비롯하여 계약당사자 중 하나가 적합성평가기관의 이의제기 관련 여타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일부 MRA/PECA는 궁극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신뢰도를 고양시키기 위해 계획된 이행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 이행 기간 중 수행되는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행 기간은 실무 담당 지정,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각 계약당사자가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통지 시스템에 대한 정의, 세미나 주최, 지침 문서의 작성 등의 책임을 이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 <활동>

협상 단계에서 DG I은 대외관계, 투자기구,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이중용도의 상품, 표준 및 인증을 관할하는 총국(DG I/M/2)이며, 이행 과정에서 DG III는 업종을 관할하는 총국이다.

DG I 총국과 (관할 업종이 PECA/MRA에 명시된) 그 외 모든 DG 총국(특히 DG III(화학제품 우수시험실관리기준(GLP), 기계 및 전기산업 업종, 의료기기, 압력용기, 레이저용 선박, 의약품 및 중동부 유럽국가(CEEC)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률 이행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업종) 및 DG XIII(전기통신 장비) 사이에 협상이 수행되면서 밀접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MRA/PECA는 공동위원회가 관리한다. MRA/PEC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외교통상정책(로마 조약의 제228조와 제113조)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되므로, DG I 총국은 MRA/PECA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연합 공동체를 대표한다. 하지만, DG III 총국과 DG XIII 총국은 특정 업종에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MRA/PECA에 따른 공동업종그룹에서 대표 역할을 한다. 심지어는 MRA/PECA에 의해 공동업종그룹이 설립되지 않아도 DG III 총국과 DG XIII 총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업종별 이해관계자를 대표한다. 사실상, 공동위원회와 공동업종그룹을 위한 준비작업은 주로 DG III 총국과 DG XIII 총국의 주무기관이 관할한다.

“표준 및 인증 관련 대외 문제”에 대한 주무기관 간 회의는 DG I 총국과 그 외 다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무기관 간의 중요한 정책 조정 포럼이며 MRA/PECA에 대한 정책을 의제로 다룬다.

각 DG 총국 내에서 많은 업종별 주무기관과 MRA/PECA 이행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DG III 총국에서 MRA/PECA 조정위원회가 조정 문제를 관할한다. 동 조정위원회의 주요 소임은 다음과 같다:

- 공동위원회 주최 및 기능 증진, 이사회 113 위원회 보고서 제출 준비 등 MRA/PECA 이행관련 모든 현안을 관할하는 DG I 총국 실무 담당 지정;
  - 공동위원회 및 공동업종그룹 관련 업종 조정;
  - 유럽연합의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 체제에 대한 영향력에 특히 주의하면서, 모든 MRA/PECA 이행 활동의 표준화를 위한 고위실무그룹에 보고서 제출;
  - 관련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제/행정 규정에 관한 정보를 각 업종에 제공;
  -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정보의 관리: 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여 적절하게 공동위원회에 제공;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3국으로부터 제3국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령하여 유럽연합 인증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각 중동부 유럽국가 체제의 적합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지원.

**업종별 소관 기구의 주요 소임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업종별 MRA/PECA 이행에 관한 모든 현안을 관할하는 실무 담당 지정;
- 필요한 경우 공동업종그룹에서 유럽연합의 업무를 준비하고 유럽연합을 대표.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국가별 관할당국 및 기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무기관과의 광범위한 접촉이 요구된다.

**부록3**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관한

2001년 9월 27일, 유럽이사회 결정(2001/747/EC)

유럽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의 제300조 (2)항의 첫 번째 호의 첫 번째 문장, (3)항의 첫 번째 호의 첫 번째 문장 및 제4항과 함께 제133조를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고려하여,

- 1) 2001년 4월 4일에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추후 체결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 2) 합당한 자국 절차를 정하여 본 협정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들의 Part B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본 협정의 이행에 대한 특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제1조**

본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은 그 부속서와 최종 협정에 첨부된 공동 선언서와 교환서신을 포함하여 본 결정에 의거하여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승인되었다.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전문은 본 결정에 첨부되었다.

**제2조**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유럽이사회의 의장은 본 협정의 제14조에 규정된 각서를 전송하여야 한다(1).

**제3조**

유럽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본 협정의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와 동 조의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타 모든 소위원회에서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통지, 요청 및 정보를 교환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 시설 목록 제공
- 적합성평가기관의 종료, 유예 또는 철회
- 시설에 의한 확인 및 동 시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불승낙
- 유예처분을 받은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에 대한 불승낙

본 협정의 발효일은 유럽공동체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 전문가의 임명
- 검증, 방문 또는 이의제기에 관한 조치



상기 각 호에 대한 규정은 본 협정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와 분야별 부속서의 그에 상응하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1. 공동위원회 또는 합당한 경우 여타 소위원회에서 유럽공동체가 채택할 견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1) 본 협정의 제8조 (2)항에 따른 절차 규칙의 채택
  - 2) 본 협정의 제8조 (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립
  - 3) 본 협정의 제8조 (3)(c)에 따른 정보 교환방법의 채택
  - 4) 본 협정의 제5조, 제7조, 제8조의 (3)(a), 제8조의 (3)(d) 및 제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검증 및 그에 관한 결정
  - 5) 본 협정의 제8조의 (3)(b)에 따른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및 확인된 시설의 설립 및 공표
  - 6) 본 협정의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확인된 시설에 대한 검증, 방문 및 이의제기와 그에 관한 결정
  - 7) 본 협정의 제10조 (2)(b)에 따른 시설의 비상상황 및 방문 방법에 대한 정의
  - 8) 본 분야별 부속서의 제7호(b), 제7호(c) 및 제9호(b)에 따른 우수제조관리기준 (GMP)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수립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GMP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이행에 관한 경과 조치를 관리 및 승인하여야 하며, (GMP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9호(a)에 따라) 그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 각서를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타방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분야별 부속서 Part B의 모든 수정 사항을 승인하고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타방 계약당사자에게 본 협정의 제15조 (3)(b)에 명시된 외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모든 경우에, 공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유럽공동체가 채택할 견해는 유럽이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가중 다수결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1년 9월 27일, 브뤼셀에서 작성.

유럽이사회 의장

M. VERWILGHEN

##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

유럽공동체와 일본(이하 “쌍방 계약당사자”)은,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시장 접근 촉진 및 쌍방 계약당사자 사이의 거래 촉진에 있어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일반 대중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품질의 향상에 대한 공통 관심을 고려하고,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대한 OECD 원칙에 공감하며, 유럽공동체와 일본의 지속적이며 유익한 협력 활동은 GMP 요구사항의 국제적 수준의 개발 및 조화에 기여해 왔음을 상기하고, 상호인정협정은 표준의 국제적 조화를 진작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 공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으로서 쌍방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특히 부속서 1A에 포함된 무역기술장벽협정(이하 ‘WTO 무역기술장벽협정’)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WTO 협정’)의 부속서 1C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하였다.

### 제1조

1. 본 협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적합성평가절차’란 제품 또는 공정이 일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규정된 관련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란 본 협정의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의미한다.
- 3) ‘지정’이란 일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준거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의거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지정 관할당국’이란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일방 계약당사자 영토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 및 감시하고, 동 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고, 동 기관의 지정을 유예하고, 동 유예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을 의미한다.
- 5) ‘지정 기준’이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일방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의 지정을 받기 위해 그 계약당사자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과 지정된 후에도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기타 관련 조건을 의미한다.



- 6) ‘확인’이란 일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른 그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의 확인기준에 대한 제조시설 또는 시험시설(이하 ‘시설’)의 준수 상태를 확인함을 의미한다.
  - 7) ‘관할당국’이란 일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확인 기준에 대한 준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시설을 실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계약당사자의 관할기관을 의미한다.
  - 8) ‘확인 기준’이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일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그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의 확인을 받기 위해 그 계약당사자의 시설이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 9) ‘검증’이란 감사 또는 실사와 같은 수단을 통해 쌍방 계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시설이 각각 지정 기준 또는 확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본 협정에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ISO/IEC Guide 2: 1996 Edition, ‘Standardis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에 정해진 의미를 갖는다.

**제2조**

- 1. 각 계약당사자는 타방 계약당사자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적합성 증명서 및 표시를 포함하여,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그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여야 한다.
- 2. 각 계약당사자는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수락하여야 한다.
  - 1)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확인 기준과 검증 결과에 따라, 그 타방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에 의해 수행된 시설에 대한 확인
  - 2) 타방 계약당사자의 확인된 시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제3조**

- 1. 본 협정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에 적용되며 또한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확인 및 동 시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적용된다. 분야별 부속서는 Part A와 Part B로 구성할 수 있다.
- 2. 분야별 부속서의 Part A에는 무엇보다도 본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분야별 부속서의 Part B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본 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각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
  - 2) 본 협정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각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 전문화된 요구사항과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협정에 포함된 모든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본 협정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확인 기준에 대해 규정된 각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
  - 3) 지정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의 목록

**제4조**

1. 각 계약당사자는 지정 관할당국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 및 감시(검증 포함)하고, 동 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고, 동 기관의 지정을 유예하고, 동 유예를 철회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관할당국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해당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확인 기준에 대한 준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1. 각 계약당사자는 감사, 실사 또는 감시와 같은 합당한 수단을 통해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지정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방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은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동 기관의 이해와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라 그리고 감사, 실사 또는 감시와 같은 합당한 수단을 통해, 확인된 시설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해당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확인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확인된 시설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지정 기준 또는 확인 기준을 각각 준수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의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타방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라 동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계약당사자는 요청 시 타방 계약당사자의 검증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시설 각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타방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검증 또는 관할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시설에 대한 검증에 관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5. 쌍방 계약당사자는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절차에 따라 인정(accreditation) 제도를 포함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확인된 시설이 확인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6. 각 계약당사자는 일방 계약당사자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합성평가기관과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1.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지정이 유예된 경우, 동 지정을 유예한 지정 관할당국의 계약당사자는 그 사실에 대하여 타방 계약당사자와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타방 계약당사자의 공동위원회 공동 의장이 동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유예되어야 한다. 타방 계약당사자는 동 지정을 유예하기 전에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여야 한다.
2.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유예를 해제한 경우, 동 지정을 유예한 지정 관할당국의 계약당사자는 해당 사실을 타방 계약당사자와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유예는 타방 계약당사자의 공동위원회 공동 의장이 동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해제되어야 한다. 타방 계약당사자는 동 등록의 유예를 해제한 날부터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여야 한다.

### 제7조

1. 각 계약당사자는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지정 기준 또는 확인 기준에 대한 타방 계약당사자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동 이의제기의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공동위원회와 타방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동 이의제기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가 공동 검증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쌍방 계약당사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했던 지정 관할당국의 입회와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술한 공동 검증의 결과는 해당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 이의제기를 받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동 이의제기 통지일 또는 공동위원회가 동 등록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날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15일 후에 유예되어야 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공동위원회가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동 등록에 대한 유예를 해제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전술한 유예의 경우, 이의제기를 청구한 계약당사자는 동 등록 유예일 이전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는 시설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일방 계약당사자 또는 쌍방 계약당사자가 취할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타방 계약당사자의 공동위원회 공동 의장이 제1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그 날까지, 이의제기를 청구한 계약당사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시설을 확인하거나 그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 제8조

1. 쌍방 계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효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본 협정의 발효일에 설립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는 총의(總意)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권고사항을 채택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각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 계약당사자의 공동 의장 주재 하에 회합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특정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절차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효력에 관한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관할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 1)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동 기관의 등록 유예, 동 기관의 등록 유예 해제, 동 기관의 등록 종료
  - 2) 달리 정해진 바가 없는 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및 확인된 시설의 분야별 목록의 확립 및 공표
  - 3) 본 협정에 명시된 합당한 정보 교환 방법의 확립
  - 4) 제7조 (2)항 및 (c)항과 제9조 (1)(c)에 명시된 공동 검증을 위한 각 계약당사자의 전문가 임명
4.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쌍방 계약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추가된 분야별 부속서의 합의를 조정 및 촉진할 책임이 있다.
6. 각 계약당사자는 확인된 시설의 목록을 적어도 1년에 한번 타방 계약당사자와 공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공동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각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8. 쌍방 계약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쌍방 계약당사자는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포함된 적용 조문 또는 부속서를 규정하여 상호 통신하여야 한다.
  - 2) 쌍방 계약당사자는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 3) 쌍방 계약당사자는 본 협정과 관련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의 모든 계획된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 4) 쌍방 계약당사자는 쌍방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 관할당국,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및 확인된 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된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1.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적용하여야 한다.
  - 1) 각 계약당사자는 필요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안을 타방 계약당사자 및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이 지정하는 해당 계약당사자의 적합성평가기관이 본 협정에 따라 등록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2) 타방 계약당사자는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그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지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a)호에 명시된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전술한 고려사항에서 전술한 타방 계약당사자는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전술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제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동 제안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공동위원회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공동 검증을 수행하거나 동 기관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제안 당사자에게 동 기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술한 검증이 완료된 후 공동위원회는 전술한 제안서를 재고할 수 있다.
2. 제안 당사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위한 제안서 상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1) 적합성평가기관의 명칭과 주소
  - 2) 적합성평가기관이 평가할 권한이 있는 제품 또는 공정
  - 3)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할 권한이 있는 적합성평가절차
  - 4)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준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정 절차 및 필요 정보
3.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이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이 동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계약당사자가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계약당사자의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정 관할당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각 계약당사자의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종료를 제안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타방 계약당사자의 공동위원회 공동 의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날에 종료되어야 한다.
5. 신규 적합성평가기관을 등록하는 경우, 타방 계약당사자는 등록일로부터 동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이 종료된 경우, 타방 계약당사자는 제6조 (1)항 및 제7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료 전에 해당 적합성평가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여야 한다.

## 제10조

1. 본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안전, 보건, 환경을 보호하거나 기만적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방 계약당사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2. (a) 일방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은 타방 계약당사자와 해당 제조시설이 방문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타방 계약당사자의 제조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b)호에 규정된 비상상황의 발생 시, 타방 계약당사자가 방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확인과 제2조 (2)항에 따라 동 제조시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계속 수락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목적으로 타방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 담당관이 동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전술한 방문은 타방 계약당사자의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과 본 항의 (b)호에 따라 결정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당사자는 전술한 방문과 관련하여 위에 명시한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이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b) 공동위원회는 관련 분야별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본 항의 (1)호에 명시된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와 전술한 방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1. 제2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쌍방 계약당사자의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 대한 상호 수락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여타 비회원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하도록 일방 계약당사자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WTO 무역기술장벽협정과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가 WTO 협정의 회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본 협정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 조약이 적용되는 영토와 일본 영토에 적용된다.

**제13조**

각 계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달리 요구된 바가 없는 한, 어느 계약당사자도 본 협정에 따라 얻은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1. 본 협정은 쌍방 계약당사자가 본 협정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각자의 자국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알리는 외교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되어야 한다.
2. 일방 계약당사자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계약당사자에게 본 협정을 종료시킨다는 뜻을 통지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5조**

1. 본 협정의 분야별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2. 분야별 부속서의 Part A와 본 협정의 제1조~제15조의 조항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분야별 부속서의 Part A의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a) 각 분야별 부속서의 Part A의 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은 쌍방 계약당사자가 본 항의 (b)호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본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 (b) 본 협정은 쌍방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사항이 분야별 부속서의 Part B에 규정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 지정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의 변경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각 계약당사자의 해당하는 내국 적용 절차에 따라 유럽공동체와 일본 정부 간에 외교 각서를 교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3. 일방 계약당사자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서 신규 또는 추가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한 경우, 관련 분야별 부속서의 Part B는 본 조의 제3항의 (b)호의 두 번째 문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신규 또는 추가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하는 적용법, 규정 및 행정규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부속서는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일본어로 번역된 2부의 원본으로 작성된다. 전술한 언어로 작성된 원본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로 작성된 원본과 일본어로 작성된 원본이 다른 언어로 작성된 원본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에 대한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인이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4월 4일 브뤼셀에서 작성.

**최종 협정**

아래에 서명한 서명인은:

본 협정의 일방 계약당사자인 유럽공동체(이하 ‘유럽공동체’)를 대표하고  
 본 협정의 타방 계약당사자인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에 명시된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이하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는 협정:

- 통신용 단말장비 및 무선장비
- 전기제품
- 화학물질에 대한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 의약품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유럽공동체 대표와 일본 대표는 아래에 명시된 공동 선언서와 교환서신을 작성하여 본 최종 협정에 첨부하였다.

-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향후 협상에 관한 공동 선언
- 적합성평가기관(CAB)의 기술 역량에 관한 국제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관한 공동 선언
- 시장 접근 촉진에 관한 공동 선언
- 분야별 부속서의 완전성에 관한 교환서신

의약품의 GMP에 대한 분야별 부속서의 준비 작업과 정보 교환에 관한 교환서신  
언어 사용에 관한 교환서신

###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공동 선언서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라 유럽공동체(EC)와 일본 정부(GOJ)는 본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언하였다.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향후 협상에 관한 공동 선언  
본 협정에 기반하여 일본 정부와 유럽공동체는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본 협정의 분야별 범위의 확장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다. 특히 일본 정부와 유럽공동체는 동 기간 내에 의료기와 압력용기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의 기술 역량에 관한 국제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관한 공동 선언  
일본 정부와 유럽공동체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발행된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본 협정에 명시된 쌍방 계약당사자의 적용 요구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기관(CAB)의 충분한 기술 역량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기로 한다.

시장 접근 촉진에 관한 공동 선언

일본 정부와 유럽공동체는 본 협정의 의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및 본 협정의 대상인 시설의 상태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 일본과 유럽공동체 간 무역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분야별 부속서의 완전성에 관한 교환서신

2001년 4월 4일 브뤼셀에서 작성

친애하는 의장님,

유럽공동체는,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에 첨부된 분야별 부속서는 해당 분야별 부속서에 의해 적용되는 요구사항, 제품 또는 데이터에 관한 모든 기존 제3자의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준수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의장님의 건안과 귀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럽연합공동체 대표



### 언어 사용에 관한 교환서신

2001년 4월 4일 브뤼셀에서 작성

친애하는 의장님,

유럽공동체는 예를 들면 GMP 실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정보를 교환할 때 달리 합의한 바가 없는 한, 본 협정에 따라 영어로 작성한 요약본을 첨부하고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공동위원회에서 조기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의장님의 건안과 귀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럽연합공동체 대표

**부록4**

**비회원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 절차**

**(I) 유럽연합에 의한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 절차**

기본적으로 지정은 지정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주소 등), 해당 국가, 해당 법률, 세부적인 기술자격 인증(제3국의 요청에 따름) 등을 지정하는 형식을 사용한다. 아래의 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 웹사이트에서는 인증기관과 별도로 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ww.europa.eu.int/comm/enterprise/international/indexb1.htm>.

주의: 동 지정을 통해 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은 비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비회원국에서 출시할 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에 식별번호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지정 절차:** 유럽연합 회원국은 Annex A에 명시된 양식(부속 각서에 명시된 정보를 보충)을 사용하여 작성한 적합성평가기관 후보 관련 서류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아래의 주소로) 제출한다:

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Unit ENTR/G/1 rue de la Loi, 200 B-1049 Brussels

그러면 동 서류가 아래의 각 담당부서에 전달된다:

- 기업총국의 관련 업종 담당부서(Unit)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추가 또는 제3국/업종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업총국 Unit ENTR/G/1 담당부서는 해당 회원국에게 동 서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타 상세 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 서류를 상호인정협정에 포함시키는 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Trade)의 담당 부서(Unit TRADE/F/2)

1. 상호인정협정의 규정은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을 관련 업종별 부속서에 포함시킬 때 적용된다.

2.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승인 결정을 무역총국의 Unit TRADE/F/2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 동 지정 결정을 유럽연합 관보[OJEC (L series)]에 공표하여야 한다;
- 동 정보는 사무국을 경유하여 유럽경제지역/유럽자유무역연합(EEA/EFTA) 국가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동 정보를 기업총국 Unit ENTR/G/1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 웹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하여 (동 웹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는 정기적으로 유럽연합 관보[OJEC (C series)]에 공표된다).

동 정보를 관련 업종 담당부서(Units)에 전달하기 위하여,



**(II) 비회원국에 의한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 절차**

지정은 상호인정협정의 적용 조건(광의적으로는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업종의 경우, 상호인정협정의 기본 협정 조건 및 관련 업종별 부속서에 따라,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유럽연합 공동체의 인증기관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 적용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정 절차에 따라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주의: 동 지정을 통해 비회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은 유럽연합지침 및 상호인정협정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공동체에 출시할 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동 적합성평가기관은 특정 업종에서 식별번호(CE 인증 마크 옆에 표시됨, 적합성평가기관이 생산 단계에 개입함을 증명함)를 받아야 한다.

**지정 절차:** 비회원국은 Annex B1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성평가기관의 신청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무역총국 담당 부서에 (아래의 주소로) 제출한다: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Unit TRADE/F/2  
rue de la Loi, 200 B-1049 Brussels

그러면 동 신청서가 아래의 담당부서에 전달된다:

- Directorate General for Enterprise- Unit ENTR/G/1. 기업총국 Unit ENTR/G/1 담당부서는:
- 기업총국의 관련 업종 담당부서(Unit)에 동 신청서를 전달한다(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 정보를 구할 목적으로 상주 대표(Permanent Representations)를 경유하여 동 신청서를 회원국에 전달한다.

무역총국의 Unit TRADE/F/2 담당부서는 상호인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상세 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해당 회원국에게 요청하고, 기업총국의 Unit ENTR/G/1 담당부서가 전달한 의견을 따른다.

1.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들)은 상호인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관련 업종별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무역총국의 Unit TRADE/F/2 담당부서는 Annex B2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동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결정을 전달한다: 그런 다음:
  - 동 지정 결정을 유럽연합 관보[OJEC (L series)]에 공표하여야 한다;
  - 동 정보는 사무국을 경유하여 유럽경제지역/유럽자유무역연합(EEA/EFTA) 국가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동 정보를 기업총국 Unit ENTR/G/1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웹페이지에 등록하기 위하여;

1.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 공동체의 견해(입장)를 결정하는 절차는 관련 상호인정협정을 채택할 목적으로 유럽연합 이사회 통신문에 명시된다.

가. 동 정보를 관련 업종 담당부서(Units)에 전달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 ANNEX A

**유럽연합과 (제3국(체약 당사국)) 사이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유럽연합에 의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지정**

날짜:

발신: 유럽연합 회원국      수신:

1. 적합성평가기관 명칭, 약어,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유럽연합 회원국 적합성평가기관)
2.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유효 기간:
  - 만료일자
  - 감독관리절차에 대한 정보(횟수 포함)

1.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자격 인증(인정 또는 기타 인가):

본 [적합성평가기관의 명칭]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부속서 [상호인정협정에 명시된 적용 부속서를 기입할 것]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이행함:

인정 기준 (45003 또는 45010) / 또는 평가 기준:

EN 45001, EN 45004, EN 45011, EN 45012, ISO Guide

기타 자격 인증(필요 시 적용 부속서도 함께 기입할 것):

품목/품목의 범위	절차 / 기준	참조 법률의 조문/부속서

- 1) 해당 시 관련 인정범위 등의 필수 문서를 첨부

- 제3국(상호인정협정 체약국)의 법/규제/행정 규정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요구사항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정 절차. (예: 문서 검토에 관한 정보 및/또는 현장 실사단 평가에 관한 세부 정보).



2. 제3국의 법률과 관련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상호인정협정 / ANNEX B1

**유럽연합과 (제3국(체약 당사국)) 사이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제3국(체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

날짜: 등록번호(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보)

적합성평가기관 명칭, 약어,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3국 적합성평가기관)

- 1.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유효 기간 : 만료일자
- 2. 감독관리절차에 대한 정보(횟수 포함)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자격 인증(인정 또는 기타 인가)

- 본 [적합성평가기관의 명칭]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부속서 [상호인정협정에 명시된 적용 부속서 기입할 것]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이행함:

인정 기준 (45003 또는 45010) / 또는 평가 기준:

EN 45001, EN 45004, EN 45011, EN 45012, ISO Guide

기타 자격 인증(필요 시 적용 부속서도 함께 기입할 것):

- 해당 시 관련 인정범위 등의 필수 문서를 첨부

품목/품목의 범위	절차/방법	참조 법률의 조문/부속서

유럽연합의 법/규제/행정 규정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요구사항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정 절차(예: 문서 검토에 관한 정보 및/또는 현장 실사단 평가에 관한 세부 정보).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상호인정협정 / ANNEX B2

**유럽연합과 (제3국(체약 당사국)) 사이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CAB) 지정에 대한 확인.**

날짜:

발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신: 제3국(체약국)

날짜가 표시된 통신문:

2A. 적합성평가기관 명칭, 약어,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3국 적합성평가기관)

2B. 적합성평가기관 식별번호(해당 시):

참고: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설계관리 단계에만 개입한 경우에는 동 식별번호에 CE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1)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유효 기간:

- 만료일자

품목/품목의 범위	절차/방법	유럽연합 참조 적용법의 조문/부속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DIRECTORATE-GENERAL

적합성 및 표준화,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 하의 업계

적합성, 상호인정 측면

Brussels, 14th June 2001 ENTR/G/1/-GM D(96)

ANNEX TO DOC. CERTIF.96/3 - rev.6

주제: 제3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절차

상호인정협정의 핵심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능력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업종의 품목을 평가 및 인증할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술한 제3국의 적용 규정 및 기술 요구사항은 참조(기준) 법률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전술한 제3국은 유럽연합 역내 시장 차원에서 실제로 인증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될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문서를 상호 교환한다. 이사회 113 위원회를 경유하여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지정 절차에 관한 지침(Certif 96/3 rev. 5)을 작성하였다.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의견을 경청한 바에 따르면,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해 요청되는 관련 정보/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3국 법률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히 다음 각 호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정보: 명칭, 주소, 연락 정보;
- (2) 모든 관련 자격 인증(예: 인정)에 관한 정보가 명시된 증명서/인증서와 지정 기준;
- (3) 법률 및 품목 유형/업종 또는 합당한 경우 법률에 명시된 표준을 고려한 지정 적용 범위;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하기에 적절한 표준의 표시.

각 상호인정협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요구사항을 지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3국의 법률에 명시된 인증 수행에 필요한 다른 모든 관련 문서를 포함하여 제3국의 적용 법률/규정을 신청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알고 있다는 증거를 강조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많은 경우에 유럽연합 법률 접근법과 달리 제3국의 규정은 국내 또는 국제 표준을 의무 준수 요소로 참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함.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첨부된 전기안전 부속서의 경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청 양식인 국가인정시험기관 (NRTL) 프로그램을 지정서에 첨부하여야 함. 이를 통해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국가인정시험기관(NRTL)의 지위를 갖게 됨.

## [참고 문헌]

- [1] EU의 MRA 홈페이지 <https://ec.europa.eu>
- [2]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홈페이지 [www.postel.go.id](http://www.postel.go.id)
- [3]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홈페이지 [www.ic.gc.ca](http://www.ic.gc.ca)
- [4] 튀니지, 영국, 인도네시아, EU 등 상호인정협정 추진관련 자료



---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방안 연구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58323)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발행일 : 2020. 12.

발행인 : 김정렬

발행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화 : 062) 338-4414

인쇄 : (사)중증장애인복지협회 도동

Tel. 062) 363-4454

---

ISBN : 979-11-5820-178-4 < 비매품 >

- 주 의 -

1. 이 연구보고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58323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http://www.rra.go.kr>



9 791158 201784

ISBN 979-11-5820-178-4

비매품

93560

